

2026년

# 해양수산부 「청년창업어업인장학금」 선발 및 운영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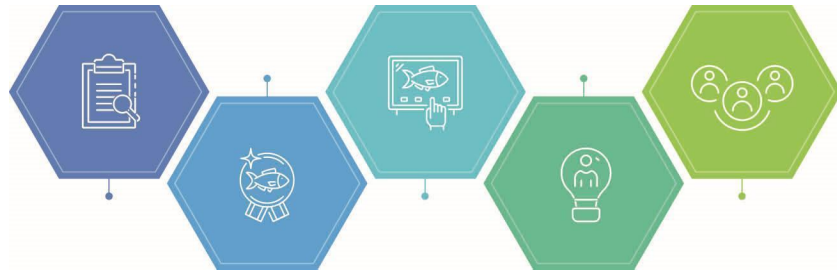


해양수산부



한국농어촌희망재단





## 2026년 해양수산부 「청년창업어업인장학금」 선발 및 운영 지침

### 목 차

|                                               |    |
|-----------------------------------------------|----|
| I. 장학금 개요 .....                               | 6  |
| II. 지원 세부내용 .....                             | 7  |
| III. 장학금 신청 및 선발 .....                        | 10 |
| IV. 장학금 지급 .....                              | 16 |
| V. 보증보험 가입 .....                              | 19 |
| VI. 장학생 관리 .....                              | 21 |
| VII. 의무교육 운영 .....                            | 23 |
| VIII. 의무종사 인정범위 및 이행 .....                    | 25 |
| IX. 의무종사 이행 점검 및 사후 관리 .....                  | 35 |
| X. 장학금 반환 및 환수 .....                          | 38 |
| XI.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42 |
| XII. 홍보 계획 .....                              | 43 |
| XIII. 추진일정 .....                              | 45 |
| 붙임 1. 장학금 지원대상 대학명단 .....                     | 46 |
| 붙임 2. 취창업 계획서 .....                           | 48 |
| 붙임 3. 장학생 선발 세부지표(안) .....                    | 50 |
| 붙임 4. 운영위원회 규정 .....                          | 53 |
| 붙임 5. 장학금 포기 확인서 .....                        | 54 |
| 붙임 6. 지급(신용)보험 가입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 | 55 |
| 참고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 56 |
| 참고 2. 장학생 의무사항 및 장학금 수혜 관련 취·창업 협약서 .....     | 61 |
| 참고 3. 관련법령(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등) .....             | 64 |
| 참고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및 국세청 업종코드 .....              | 66 |
| 참고 5. 의무종사 절차 개요 .....                        | 67 |
| 참고 6. 의무종사 인정요건 및 시작·변동 심사기준 .....            | 68 |
| 참고 7. 청년창업어업인장학금과 타장학금 비교표 .....              | 69 |



## 2026년 청년창업어업인장학금 주요제도 변경사항

| 구분                   | 2026년 1학기(舊)                                                                                                                                                                                                                                                                                                                                                                                              | 2026년 2학기(新)                                                                                                                                                                               | 변경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학금<br>지원<br>대상      | <div><input type="checkbox"/>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기준<br/>으로 지원대상 대학에 재학중<br/>이어야 함</div> <div><div>① (학년:신규계속공통) 대학교 1학년<br/>2학기 ~ 4학년</div><div>② (학점:성적:신규계속공통) 직전학기<br/>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백분위<br/>기준 성적 70점 이상인 자</div><div>③ (나이:신규장학생) 재학생 중 장학금<br/>신청 개시일 기준 만 20세~만 40세</div><div>④ (의무교육:계속장학생) 직전학기<br/>의무교육 이수자</div></div>                                                                             | <div><input type="checkbox"/> &lt;좌동&gt;</div> <div><div>① &lt;좌동&gt;</div><div>② &lt;좌동&gt;</div><div>③ (나이:신규장학생) 재학생 중 장학금<br/>신청 개시일 기준 만 40세 미만인 자</div><div>④ &lt;좌동&gt;</div></div> | 장학금의<br>지원목적에 따라<br>만 20세 미만이<br>배제되지 않도록<br>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iv><input type="checkbox"/> <u>미성년자 서류 추가</u><br/>&lt;신설&gt;</div>                                                                                                                                                                                                                                                                                                                                      | (붙임) 지급(신용)보험 가입 법정대리인<br>(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무<br>종사<br>인정<br>범위 | <div><input type="checkbox"/> 인정 세부절차</div> <div><div>○ 인정대상별 의무종사 지역, 산업<br/>범위 등 사항</div><table><tr><th>인정대상</th><th>지역</th><th>산업범위</th></tr><tr><td>어업인</td><td>해당없음</td><td>제한없음</td></tr><tr><td>어업법인</td><td>해당없음</td><td>제한없음</td></tr><tr><td>어업 및 수산업<br/>분야 산업체</td><td>어촌지역</td><td>블루푸드테크<br/>(전·후방산업)</td></tr><tr><td>기타</td><td>-</td><td>-</td></tr></table></div> <div>&lt;신설&gt;</div> | 인정대상                                                                                                                                                                                       | 지역                                              | 산업범위 | 어업인 | 해당없음 | 제한없음 | 어업법인 | 해당없음 | 제한없음 | 어업 및 수산업<br>분야 산업체 | 어촌지역 | 블루푸드테크<br>(전·후방산업) | 기타 | - | - | <div><input type="checkbox"/> &lt;좌동&gt;</div> <div><div>○ &lt;좌동&gt;</div><table><tr><th>인정대상</th><th>지역</th><th>산업범위</th></tr><tr><td>좌동</td><td>좌동</td><td>좌동</td></tr><tr><td>좌동</td><td>좌동</td><td>좌동</td></tr><tr><td>좌동</td><td>농어촌지역</td><td>좌동</td></tr><tr><td>좌동</td><td>좌동</td><td>좌동</td></tr></table></div> <div>* 어업 및 수산업 분야 산업체의 경우<br/>내륙지역인 농촌지역 인정</div> | 인정대상 | 지역 | 산업범위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농어촌지역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수산업 분야 회사로<br>인정될 경우<br>농촌지역을<br>의무종사 인정<br>대상으로 적용하여<br>운영 실효성 도모 |
|                      | 인정대상                                                                                                                                                                                                                                                                                                                                                                                                      | 지역                                                                                                                                                                                         | 산업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어업인                  | 해당없음                                                                                                                                                                                                                                                                                                                                                                                                      | 제한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어업법인                 | 해당없음                                                                                                                                                                                                                                                                                                                                                                                                      | 제한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어업 및 수산업<br>분야 산업체   | 어촌지역                                                                                                                                                                                                                                                                                                                                                                                                      | 블루푸드테크<br>(전·후방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정대상                 | 지역                                                                                                                                                                                                                                                                                                                                                                                                        | 산업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좌동                   | 좌동                                                                                                                                                                                                                                                                                                                                                                                                        | 좌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좌동                   | 좌동                                                                                                                                                                                                                                                                                                                                                                                                        | 좌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좌동                   | 농어촌지역                                                                                                                                                                                                                                                                                                                                                                                                     | 좌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좌동                   | 좌동                                                                                                                                                                                                                                                                                                                                                                                                        | 좌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

## 장학금 개요

- 지원목적 : 수산산업분야 청년인력 유입 및 정착지원을 위해 대학 졸업 후 수산분야 취·창업 의무종사 조건부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로, 수산계 대학, 수산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1학년 2학기~4학년 학생으로,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20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인 자
- 지원규모 : 2026년도(안) 학기별 30명(연간 60명) 내외, 246백만원
- 지원내용 : 장학금(매 학기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00만원)
  - (최대지원횟수) 7회
    - ※ 학업장려금 : 재학 중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을 위한 생활비성 지원금
    - ※ 등록금은 전액 지원하며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 심사 및 선발
  - (절차) 신청 → 대학교추천 → 서류심사 → 보증보험 가입 → 선발
  - (계속자 우선선발) 자격요건 충족시 계속장학생을 우선선발 후 나머지 인원을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
- 장학생 의무사항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어업 및 수산분야에 취·창업
    - ※ 의무종사 미이행 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 (의무교육) 재단이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신규자 최대 25시간, 계속자 20시간 이내) 필수 이수
    - ※ 의무교육 미이수 시 향후 1년간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며, 이미 수혜한 장학금에 대한 의무종사는 유지됨
  -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

## II 지원 세부내용

### 1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기준으로 지원대상 대학에 재학중이어야 함

- ① (학년:신규·계속공통) 대학교 1학년2학기~4학년(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② (학점, 성적:신규·계속공통)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백분위 기준 성적 70점 이상인 자
  - 단, 대학 학칙에 최소 이수학점을 12학점 미만으로 명시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최소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
  - 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 이수학점을 적용(예외 인정)
  -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③ (나이:신규장학생) 재학생 중 장학금 신청 개시일 기준 **만 40세 미만인 자**
  - ※ 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 장학금 신청자 연령은 재단 장학시스템 회원가입 시 휴대폰 본인확인 또는 아이핀 인증으로 확인
- ④ (의무교육:계속장학생) 직전학기 의무교육 이수자
  - ※ 학기 중 의무교육 미이수(장학금 수혜횟수별 교육요건 미충족 등) 시 향후 1년간 장학생 자격 상실
  - \* 계속장학생은 직전학기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계속해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려는 자를 가리키며, 계속장학생도 매학기 신청해야 함

□ 유의사항

- 장학금 신청은 미등록(등록금 전액 미납입) 자만 가능
- 복학예정자는 학교 담당자와의 복학협의 후 장학금을 신청하고, 학교 측은 복학등록자에 한하여 추천 가능
- (계속장학생중 해당자) 등록금이 이연처리된 복학예정자는 장학금 신청기간에 학생장학 시스템에서 복학예정자로 선택, 신청을 하여야 하고, 교직원인 학적관리에서 해당학생의 학적을 복학예정자로 선택하여야 함
- 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에서 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신청 가능

## 2 > 지원대상 대학

□ 지원 대학 : 6개 수산계 대학, 61개 수산계학과(지원대학 목록 : 붙임1)

□ 학교 유의사항

- 장학생 모집 및 선발, 장학금 지급 및 학적 관리 등 대학 역할 이행
-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장학생을 선발·관리함에 있어 대학 내 유관부서 간 적극 업무 협조
- 특정 대학 편중현상 방지를 위해 대학별 선발인원 상한선 설정으로 대학별 선발인원은 선발규모의 20% 이내로 제한(신규장학생 적용)되며, 대학별 상한선 20% 대상자 중 총점 고득점자순으로 배정

## 3 > 선발규모

□ 인원 : 학기별 30명 (연간 60명)

□ 선발방법 : 직전학기 계속장학생이 자격요건 충족시 계속장학생을 우선선발 후 나머지 인원을 신규장학생으로 선발

## 4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등록금(매 학기 전액) + 학업장려금(학기당 200만원)

- 학업장려금은 장학생 당해학교별 의무교육 대상 전원 이수완료 후 익월 지급

\* 의무교육 미이수시 학업장려금 미지급

□ 최대지원횟수 : 7회

- 지원학기 수는 정규학기 기준이며, 전액반납한 경우 수혜횟수에 미포함
- 정규학기 초과자는 지원하지 않음



## 5 } 의무사항

### □ 의무종사 이행

-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어업 및 수산 산업 분야에 취·창업
  - ※ 의무종사 미이행 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 □ 의무교육 이수

- 재단이 정한 교육(학기당 신규자 최대 25시간, 계속자 20시간 이내) 필수 이수
  - ※ 의무교육 미이행 시 향후 1년간 장학생 지원이 중단되며, 이미 수혜한 장학금에 대한 의무종사는 유지됨

### □ 보증보험 가입

- 장학생 자격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되며, 이를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 보증보험료는 재단이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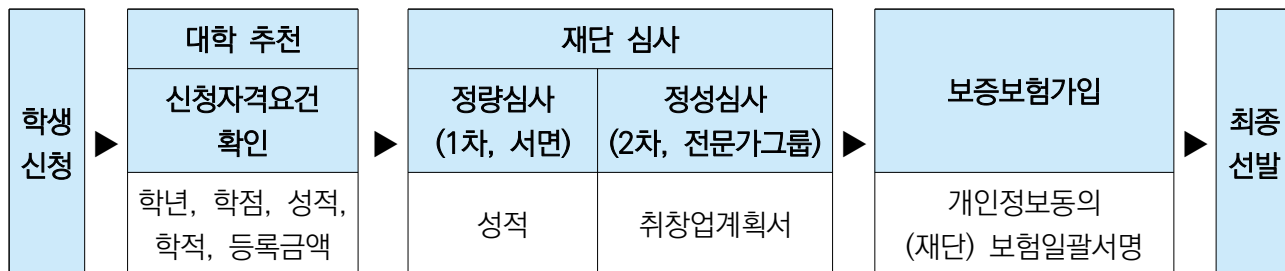
### □ 기타

- 장학생 자격 유지 및 장학생 진로현황 관련 조사에 성실히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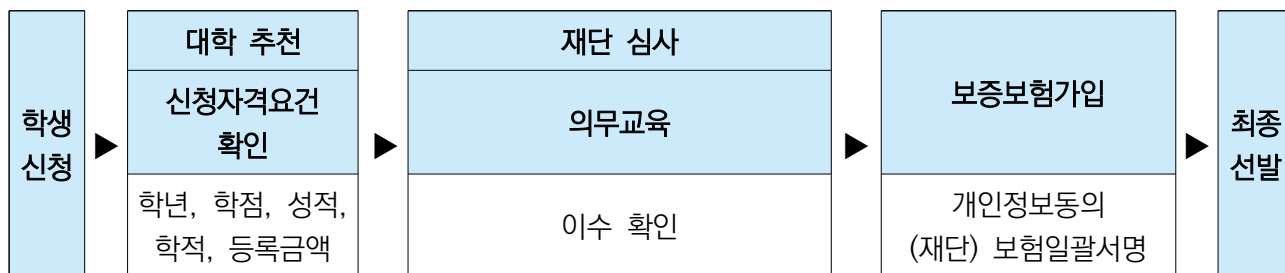
### Ⅲ 장학금 신청 및 선발

◆ 선발절차 : ① 학생 신청 → ② 대학 추천 → ③ 재단 심사 → ④ 보증보험 가입 → ⑤ 최종선발

#### 〈신규장학생〉



#### 〈계속장학생〉



#### 1 } 대학 학교(학과, 학적) 정보 등록

재단 교직원 장학시스템 접속(인증절차 후) →

학교관리(학교명, 사업자등록번호, 한국장학재단 코드, 담당자, 계좌, 통장사본 등) 수정

※ 수산계열학과는 재단에서 입력하며, 학교정보 수정만 학교에서 별도 입력함

#### □ 학교관리

○ 장학 신청 전 학교정보 변경사항 반영

○ 매학기(2회 : 1학기 4월경, 2학기 10월경) 학과정보 조사 실시 → 학과정보(학과명 변경, 인원) 변동사항 재단 제출 → 학생장학시스템 반영

#### □ 학적관리

○ 학적관리(계속장학생) : 학적관리 → 학적변경 → 학생 선택 후 학적상태 변경

## 2 학생 신청

### 가. 신규장학생

#### □ 신청 방법

- ① 재단 홈페이지(PC 또는 스마트폰, <http://www.rhof.or.kr>) 접속 → ‘청년창업어업인 장학금’ 선택 → 『학생 장학시스템』으로 이동 → 『학생 장학시스템』에서 회원 가입 (로그인)
  - 약관 동의, 실명 확인, 정보 입력 후 아이폰 또는 휴대폰 인증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로그인
- ② 장학금 신청 관련 동의 진행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참고1)
    - \* 주요내용 : 장학금 지원, 적정성 등 심사관리 관련 장학생 및 그 가구원 기본정보 등임
  - 장학생 의무사항 및 장학금 수혜 관련 취창업어업 협약서(참고2)
- ③ 신청서 기본정보 입력 : 학생정보(학교명, 학과, 학년, 초과학기, 졸업예정 여부, 재학 또는 복학예정자 여부, 비상연락처, 자택 주소 등) 입력
- ④ 취창업계획서 작성 :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서식 : 붙임2)
- ⑤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인증절차 후) 및 신청완료

### 나. 계속장학생

- ※ 직전학기 장학생이 선발학기 장학금을 계속 지원받기 위해서는 선발학기 장학금 신청기간에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이전처리된 복학예정자도 신청 필수)

#### □ 신청 방법

- ※ 직전학기 의무교육(신규자 25시간, 계속자 20시간 이내) 이수자 신청가능
- ① 재단 홈페이지(PC 또는 스마트폰, <http://www.rhof.or.kr>) 접속 → ‘청년창업어업인 장학금’ 선택 → 『학생 장학시스템』으로 이동 → 『학생 장학시스템』에서 회원 가입 (로그인)
    - 약관 동의, 실명 확인, 정보 입력 후 아이폰 또는 휴대폰 인증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로그인
  - ② 장학금 신청 관련 동의 진행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참고1)
    - 장학생 의무사항 및 장학금 수혜 관련 취창업어업 협약서(참고2)
  - ③ 신청서 기본정보 입력 : 학생정보(학교명, 학과, 학년, 초과학기 여부, 졸업예정 여부, 재학 또는 복학예정자 여부, 비상연락처, 자택 주소 등) 입력
  - ④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인증절차 후) 및 신청완료

### 3 대학 추천

#### 가. 신규장학생/계속장학생 공통

##### □ 대학은 신청 학생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 후 입력

- (학년기준) 대학교 1학년 2학기 ~ 4학년(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학점, 성적 기준)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된 백분위 기준 성적 70점 이상
  - 대학 추천기간에 대학에서 이수학점, 성적을 학사시스템에서 확인 및 입력

##### ■ Pass/Non-pass 성적증명서

- \* 성적이 없을 경우, 학교 지침에 따라 Pass 기준이 70점 이상인 경우 추천
- \* Pass 기준이 별도 없는 경우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 성적으로 입력

- 복학예정자 :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적용
- 학교 추천기간 중 성적확인이 불가한 경우, 재단 심사기간 내에 학교에서 재단으로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시, 재단에서 직접 입력 및 심사
  - \* 재단 심사기간 내에 성적확인이 안 되는 경우 탈락처리됨
- (학적기준) 재학생의 학생정보 확인·수정
  - \* 지원대상 학년, 학기 오류, 장학금 중복신청자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확인에 유의 필요
  - 선발 등록학기 기준, 졸업예정 여부\*
    - \* 의무종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임
  - 신규자의 경우 학적사항 신규 등록
    - \* 학적사항 등록오류 시 장학금 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학생 선택 후 학적상태 변경 요망  
(학적관리 → 학적변경 → 학생 선택 후 학적상태변경)
- (등록금액) 선발학기 기준 등록금액 입력

⇒ 신청 학생 자격요건 최종 확인 후 추천

※ 학생정보(학교명, 학과, 학년, 초과학기 여부, 졸업예정 여부, 재학 또는 복학예정 여부, 비상연락처, 자택 주소 등) 필수 확인

※ 신청학생 소속대학에서는 '장학생선발위원회' 개최를 통한 공정한 자격심사 및 추천

\* 장학생선발위원회 구성은 대학 재량에 맡김

→ 교직원은 대학 확인 및 추천 기한 내에 학생이 입력한 정보에 대해 수정·보완이 가능함

※ 재단은 대학에서 추천한 학생의 학과, 학적, 학점, 성적 등 기본 자격요건 부합 여부 재확인

\* 지원대상 학년, 학기 오류 등 방지를 위해 심사 전 재단 시스템상 확인

#### 4 재단 심사

##### 가. 신규장학생

□ (절차) 자격요건 확인 → 심사(정량 + 정성)

| 자격요건 확인        | 재단 심사            |                     |
|----------------|------------------|---------------------|
|                | 정량심사<br>(1차, 서면) | 정성심사<br>(2차, 전문가그룹) |
| 학적, 성적, 이수학점 등 | 성적               | 취창업계획서              |

□ 심사방법(\* 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추천된 학생에 한하여 심사)

○ 정량심사 30점 + 정성심사 70점 = 100점

(1) 정량심사 : 재단에서 성적에 대해 증빙서류 등 서면 확인 및 심사(배점 30점)

##### 【정량심사 배점기준】

| 구분   |    | 심사 항목     | 배점 |
|------|----|-----------|----|
| 정량심사 | 성적 | ■ 직전학기 성적 | 30 |
| 계    |    |           | 30 |

(2) 정성심사 : 심사위원(전문가그룹)이 취창업계획서 심사(배점 70점)

※ 정성 평가점수(70점)의 40% 미만의 평점을 받은 자는 과락처리

##### 【정성심사 배점기준】

| 구분   |            | 심사 항목                                           | 배점 |
|------|------------|-------------------------------------------------|----|
| 정성심사 | 취창업<br>계획서 | ■ 진출계획(지속적인 활동 가능성, 분야 선택의 적절성,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55 |
|      |            | ■ 진출 준비과정(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                         | 15 |
| 계    |            |                                                 | 70 |

\* 동일 수준의 취창업계획서일 경우 어업기반이 있는 자, 전공학과와 연계한 어업창업계획자 선발 우대

## □ 심사팀 구성

- 1개 팀당 심사위원 3명, 팀당 1일 기준 50명 심사

\* 50명 초과시 심사일 또는 심사팀수를 추가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음

〈예시〉

- 심사팀수 : 심사대상자 250명 기준 ÷ 50명 = 5개팀
- 심사위원수 : 5개팀 × 3명 = 15명

- 전국 단위 심사위원 풀(pool)을 구성하고, 지역·직업·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균형 있게 심사위원을 분배하여 심사팀 구성

## □ 심사위원 자격

- 수산계 교수 및 어업분야 전문가, 청년인력양성 담당 등

〈 심사위원 조건 〉

- ①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경력 6년 이상인 자
- ② 석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경력이 8년 이상인 자
- ③ 학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어업 관련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④ 어업 분야의 기술사급 이상의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⑤ 상기 ①~④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재단에서 인정하는 자

- 심사위원 추천

〈 심사위원 추천 및 위촉 〉

- ① 어업 및 수산분야 전문 교수(수산대 외), 수산계 교사로 해당 기관 추천
- ② 해양수산부 및 유관기관의 청년인력 분야 단체(협회) 등 추천

- 심사대상자 편성 : 지역, 대학, 학과 등 무작위로 분산하여 편성

- 심사기간 : 심사대상 인원수 및 심사위원 인원을 감안하여 1~5일 중으로 운영

## □ 심사방법

- 정성심사는 온라인심사로 진행

- 심사위원들은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취창업계획서 심사

- 각 심사팀의 심사위원 3명의 심사점수 산술평균을 반영

\*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 간 블라인드 심사 실시, 이해관계자(심사대상자 소속 대학 교수진) 배제 운영

- 정량심사 및 정성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취창업계획서(지속적인 활동 가능성, 계획의 실현 가능성, 계획의 구체성, 분야 선택의 적절성 순), 성적 고득점순으로 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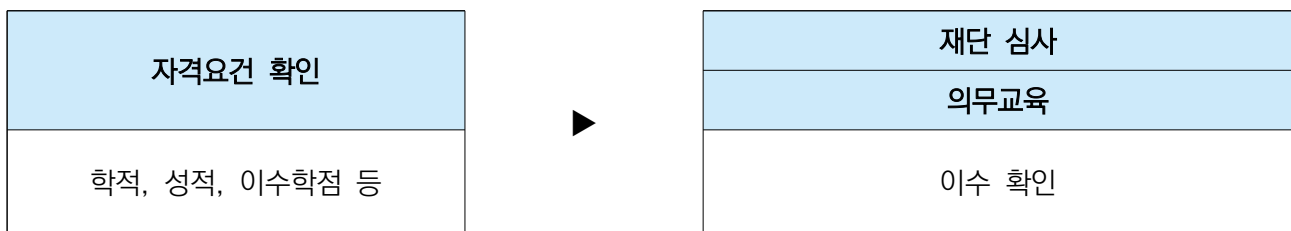
### □ 심사위원 사전교육

- (시기 및 장소) 서류심사(정성심사) 당일 시작 전 온라인 교육 실시
- (방법) 교육내용에 대한 PT 설명 및 질의응답
- (내용) 심사매뉴얼 설명(심사 절차·시간·방법), 유의사항 등

\* 해당 사전교육 확인 서명 제출 필수

### 나. 계속장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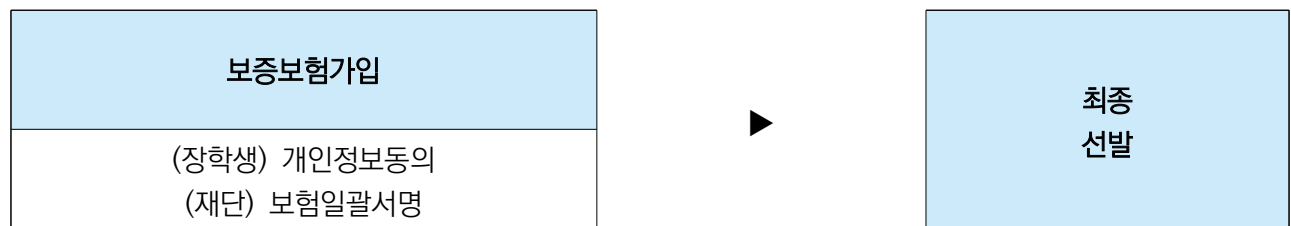
#### □ (절차) 자격요건 확인 → 심사(의무교육 이수 확인)



## 5 장학생 선발

### 가. 신규장학생/계속장학생 공통

#### □ (절차) 보증보험 가입 → 최종선발



#### □ (선발방식) 계속장학생을 우선선발 후 나머지 인원을 신규장학생으로 선발

#### □ (선발확정) 보증보험 가입자에 한해 최종 선발 확정

- 개인정보동의 안내 및 확인하며, 기한 내 개인정보동의를 하지 않을 시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

#### □ (장학생 추가선발) 장학생 선발 이후 반납 등으로 인한 결원발생시 잔여예산을 고려하여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별도 추가선발 가능

## IV 장학금 지급

### 1 대학 지급(재단→대학)

#### □ 장학생 학적 등록

- 장학생에 대한 학적 등록에 오류가 있을 경우, 장학금 지급 부적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학은 정확한 학적상태 재확인 및 등록

\* 지급 전까지 핵심항목에 대해 보완, 조정, 확정되지 않을 경우 지급보류, 지급 취소될 수 있음

#### □ 후속조치 공문 발송 및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지급

#### □ 지급된 장학금은 재단이 학자금 중복지원 관리시스템에 등록

### 2 장학생 지급(대학→장학생)

#### □ 장학금 지급

- (등록금) 대학은 최종 확정된 장학생에 대해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처리
  - 선감면이 불가능한 경우, 대학이 학생계좌(예금주 : 장학생 성명)로 직접입금
  - \* 선감면 장학금 내역에 '해양수산부 장학금' 표기
  - \* 직접입금의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학금' 표기
- (학업장려금) 재단 → 대학 → 학생 계좌로 입금
  - ※ 장학생 당해학교별 의무교육 대상 전원 이수완료 후 익월 지급
  - \* 직접입금 내역에 '해양수산부 장학금' 표기
- (중복지원 불가) 등록금은 타 장학금과 중복이 불가하며, 등록금 전액 지급 원칙(분할 지급 불가)
- (휴학자\* 처리) 대학은 학교 교칙에 의거 등록휴학이 가능한 경우 등록금 이연처리, 학업장려금은 반환하며(계속자격 유지, 반환한 학업장려금은 복학학기에 지원), 학교 교칙에 의거 등록휴학이 불가하면 선발학기 장학금을 재단에 반납처리
  -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미등록 휴학할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등록금과 학업장려금) 전액 반환(계속자격 상실)
  - \* 단, 휴학은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 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하며,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며, 이에 따른 오지급된 학기 장학금은 반환하여야 함
  - \* 등록휴학 시 복학학기 장학금 추가지급은 없음



### 〈 이연처리 및 복학 시 행정처리 〉

- (학생) 휴학 및 복학 시 학교에 보고
- (학교) 장학시스템에 학적변동사항 등록
- (학생) 장학금 신청 기간에 신청
- (학교) 장학생 추천 기간에 추천
- (재단) 매 학기 이연처리 확인 및 학생 준수사항(의무교육, 보증보험, 의무종사) 안내

※ 복학예정자는 장학금 신청기간에 학생 장학시스템에서 복학신청을 하여야 함

- (기타) 장학금으로 등록 후 해당학기 중도 휴학 등으로 학기 미수료자는 동일 학기 장학금 지급 불가(전액반납자는 예외)

## 3 } 장학금 정산 및 반납 (수혜 해당학기)

### 〈 정산 〉

#### □ 재단 교직원 장학시스템에 교직원 로그인 후 지급 내역 업로드

- 업로드 내용 : 등록금 총액, 교내·외 장학금, 학자금 대출금 등 지급 내역 정보입력
- 지급 내역은 엑셀 다운로드 후, 일괄 업로드 가능

#### □ 재단 교직원 장학시스템에 한국농어촌희망재단 수신의 결재공문 업로드

\* 공문은 재단 홈페이지 교직원 시스템 로그인 후 공문관리에 업로드 협조

- 장학생 지급공문 처리방법

- 공문관리 클릭 → 지급내역 공문관리 → 추가 → 주관기관(해양수산부) 선택 → 장학(청년창업어업인) 선택 → 제목, 공문번호, 공문(지급결과) 및 불입서류\* 업로드 후 저장
- \* 불입서류 :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영수증 또는 직접입금 영수증, 지급(이체)내역서 각 1부 (학업장려금) 직접입금 영수증, 지급(이체)내역서 각 1부
- \* 고지서 선감면과 직접 입금(용자금 반환 포함)을 병행한 경우 각 증빙서류 모두 제출
- \* 입금증 사본에는 입금명의 또는 적요란에 '해양수산부 장학금'이 표기되어야 함
- \* 공문 혹은 영수증으로 내역 확인 가능할 시, 이체내역서 생략 가능

### 〈 반납 〉

#### □ 반납 대상 : 장학금(등록금+학업장려금) 전액 반납해야 함(부분반납 불가)

- (전액장학생) 교내·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수혜한 자
- (중복수혜자) 타 장학금과 중복되어 재단 장학금 반납을 희망하는 자

## ○ (기타사항) 장학생 선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제적·징계 등으로 학적이 소멸되는 자
- 자퇴·편입자의 경우 자퇴·편입 해당학기 장학금을 반납

## □ 반납 방법(학생→대학→재단)

## ○ (재단 장학금 지급 전) 학교 장학부서에 장학금 취소 요청

## ○ (재단 장학금 지급 후) 선발학기 장학금 전액반납(부분반납 불가)

- (고지서에서 선감면된 경우) 해당학교 장학부서에서 재단으로 반납
- (학생 계좌로 입금된 경우) 학생은 학교로 반납하고 학교는 재단으로 반납

## ○ (반납절차) 반납처리 양식에 따라 '반납공문관리'에 대외 공문 업로드

\* 반납 처리 후, 교직원장학시스템을 통해 해당 학생 또는 학적 변동자에 대해서 학적 변동 처리 바람

## 【장학생 반납처리 양식】

| 연번    | 장학금명 | 성명 | 생년월일 | 학과(부) | 반납금액 | 반납일시 | 반납사유              |
|-------|------|----|------|-------|------|------|-------------------|
| 1     |      |    |      |       |      |      | 국가( )장학금<br>전액장학생 |
| 이하 빈칸 |      |    |      |       |      |      |                   |

## 【장학생 반납공문 처리방법】

- ① 재단 홈페이지 교직원 로그인 → 반납관리 클릭 → 반납대상자 체크 후 반납변경 클릭 → 반납 체크, 반납사유 선택, 반납입금일자 지정 후 저장
- ② 공문관리 클릭 → 반납공문관리 → 추가 → 주관기관(해양수산부) 선택 → 제목, 공문번호, 공문 및 붙임서류(입금영수증) 업로드 후 저장 → 리스트 확인 후 재단과 통화

## 【반납 후 학적변동 처리방법】

재단 홈페이지 교직원 로그인 → 학적관리 → 학적변경 →  
학적변경 대상자 체크 후 학적상태 변경 → 학적사유, 학적변경일(기간) 지정, 저장

※ 청년창업어업인장학금 전용 반납계좌 : 농협 301-0184-0812-31, 한국농어촌희망재단

\* 청년창업어업인장학금 반납계좌는 청년창업농장학금 반납계좌와 분리 운영되오니 반납대상자의 장학금을 반드시 확인 후 해당계좌로 입금

\* 재단으로 장학금 반납 시 입금자명(받는 계좌표시)에는 반드시 '대학명'으로 표기



## 보증보험 가입

### 1 } 보험대상 및 기간

- (목적) 장학생 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환수를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
- (보험대상) 해당학기 장학금(등록금+학업장려금) \* 계속장학생도 가입
- (가입시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기마다 재단이 공지한 기간 내 가입
- (보험기간)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기부터 졸업학기까지 재학기간 + 보험사와 협의한 보험기간  
※ 재학 중 학적변동, 유예사항 등이 추가로 발생하면 학적상태 확인 후 보험기간을 재산정하여 연장할 수 있음

#### 〈보증보험 가입기간 산정 기초〉

- ① 재학기간 : 학년에 따라 상이하며, 1학년 2학기 기준 3.5년
  - ② 취·창업준비기간: 0.5년
  - ③ 장학금수혜가능기간\*: 수혜가능횟수(1~7회) × 0.5년(180일)로 산정  
\* 의무종사(유예기간 포함) 이행기간(2년)로 산정하여 가입  
\* 유예기간(2년)의 경우 따로 산정하지 않으며, 수혜 가능횟수에 포함  
단, 2년 유예기간 초과 전 의무종사 시작 시 의무종사 종료시점 맞춰 보증보험연장
  - ④ 보증보험 기간: ① + ② + ③ + 운영기간 1년
- (예시) 1학년2학기 장학생 : 재학(3.5년) + 취·창업준비(0.5년) + 의무종사(유예기간포함) 이행기간(2년)  
+ 운영(1년) = 7년

### 2 } 가입 절차 및 시기

- 보증보험 가입 절차
  - 장학생이 보증보험사 회원가입 및 보증보험가입 관련 개인정보동의 후 보험사가 신용 심사 등을 마치고, 재단이 일괄적으로 전자서명 및 보험료 결제하여 최종 가입

- 보증보험 개인정보동의\*(학생) → 일괄 보증심사(보험사) → 전자서명(재단) → 보험료 납부(재단)

\*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휴대폰 본인인증 등

※ 단, 금융기관 신용관리 대상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됨

○ (가입시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기마다 재단이 공지한 기간 내

- 매 학기 신규 및 계속 장학생 가입 일정은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문자 안내

\* 계속 장학금 수혜자도 매 학기 가입하여야 함

\* 휴대폰 연락처 변경사항 등 개인정보 최신화 의무는 학생에게 있음

□ 보증보험 보증서

- SGI서울보증보험에서 발송된 카카오톡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시 자동으로 재단으로 정보가 제공됨(학생이 제출 불필요)

3 } 보험료 및 정산

- (보험료 산출방식) 보험료는 장학금액(등록금+학업장려금), 보험료율, 보험기간에 따라 보증보험사에서 정한 금액에 따르며 재단에서 납부

- 1회 보험료 : 장학금 × 보험료율 × 보험가입기간

\* 보험료 : 재학기간, 등록금 등에 따라 보험료 상이하며 3학년 1학기 재학생 한 학기 500만원 장학금 수혜기준으로 보험료 5만원 내외

※ 보증보험 기간만료 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장학생은 재단에서 대납

- (보험료 정산) 학생이 장학금 포기(재단에 포기확인서 제출 : 붙임5) 또는 의무종사 종료 시 재단은 잔여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음(환급금은 보증보험사에서 처리)

- 정산 기준일은 학생의 의무종사 종료일 또는 장학금 포기일임

## VI

## 장학생 관리

\* 수혜학기 이후 발생하는 사항

### □ 학적 변동

- (장학생) 학적변동 시 반드시 소속대학의 담당자에게 알리고, 학적변동 사유에 따른 장학생 자격유지 가능 여부를 확인
  - 제적(징계처분) :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며, 대학으로 장학금 포기 확인서를 제출하고 그간 받은 장학금 전액 반환
  - 휴학 : 휴학은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 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졸업유예기간 포함) 까지 허용하며,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므로 휴학시점 해당 학기 장학금을 반납해야 하며, 휴학학기 이전에 받은 장학금은 반환 또는 의무종사 선택 가능
  - 자퇴·편입 등 : 자퇴나 편입 등으로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을 반납해야 하며, 이전학기 장학금은 반환 또는 의무종사 선택 가능
- ※ 단, 학적변동사항(제적, 편입, 자퇴 등)이 발생하여 의무종사 선택시 보증보험 기간 내에 의무종사 또는 반납을 선택 해야하며, 추가보증보험 연장 사유 미해당시 장학금 전액 반환 조치함.
- (대학) 학생의 학적 변동사항(제적·휴학·자퇴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변동사항을 재단에 통보 및 재단 장학시스템에 등록
  - 대학은 학적변동에 따른 장학생 자격유지 여부, 장학금 반환 등에 대한 사항을 장학생에게 안내
    - \* 학적 변동사항에 따른 자격상실 시 학생에게 '장학금 포기확인서(붙임5)'를 받아 재단에 공문으로 제출
    - \* 장학생이 휴학할 시에는 학생의 휴학 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학 내 학적관리 자료를 재단에 공문으로 제출(휴학기간 3년(졸업유예기간 포함) 초과 확인용)
    - \* 학적변경 사항은 학적변경일 기준 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제출

### □ 교환 학생

- (교환학기 지원) 교환학생도 재학생으로 보며,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소속 대학(국내)의 등록금에 해당하는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지원
  - 대학은 교환학생의 해당학기 학적을 재단 장학시스템에 '재학(교환)'으로 입력

- 개인적인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은 인정되지 않고, 해외 인턴십은 소속대학에서 재학으로 인정할 경우에만 허용
- 소속 대학(국내)에서 재학으로 인정하나, 해외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원 불가
- 교환학생에 선발되어 외국에 체류할 경우 의무사항(의무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대체

#### □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 (자격상실) 장학생 지원기준(학점, 성적 등) 미충족, 직전학기 의무교육(오리엔테이션 (신규장학생만 적용), 현장실습교육 등) 미이수, 장학생 본인포기 등으로 더 이상 계속 장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
- 자격상실 이후에도 졸업 후 의무종사는 유효하고, 수혜금액 전액 반환 시 의무종사 해제

## VII 의무교육 운영

### 1 의무교육 개요

□ 목적 : 장학생의 졸업 후 수산분야 진출 및 안정적인 정착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실습 중심 교육과정 운영

□ 대상 : 청년창업어업인장학생 전원

□ 기간 : 수혜학기 학기 중

□ 과정개요

| 구분   | 오리엔테이션                                                                                                                                                                  | 현장실습교육                                                                                                                                                                                                |
|------|-------------------------------------------------------------------------------------------------------------------------------------------------------------------------|-------------------------------------------------------------------------------------------------------------------------------------------------------------------------------------------------------|
| 이수시간 | 5시간                                                                                                                                                                     | 20시간                                                                                                                                                                                                  |
| 교육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학금 지원제도(의무교육, 의무종사, 환수 규정 등) 및 장학생 의무사항 안내</li> <li>어업·어촌 비전 특강</li> <li>기타 교육 및 세부규정 등 안내</li> <li>신규장학생 대상 장학증서 수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교육 + 심화교육</li> <li>수산양식, 어선어업 등 취·창업을 위해 수산정책, 융복합 미래 유망업(스마트 양식, 친환경어업), 유통판로 방향 등 실무교육 진행</li> </ul> <p>※ 어촌어항공단, 해양수산인재개발원(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의 운영 교육과정 반영 개발</p> |
| 운영주체 | 재단                                                                                                                                                                      | 재단, 어촌어항공단,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등                                                                                                                                                                               |
| 운영방식 | 이론 및 현장교육(온라인병행 가능)                                                                                                                                                     | 이론 및 현장교육(온라인병행 가능)                                                                                                                                                                                   |
| 대상자  | 신규장학생                                                                                                                                                                   | 신규장학생 + 계속장학생                                                                                                                                                                                         |

\* 신규장학생은 오리엔테이션(OT) 참석(5시간)이 원칙이며, 참석 불가능 시 사유서 제출 후 온라인 대체교육 실시

## 2 세부과정 및 절차

### □ 오리엔테이션

- 신규장학생 대상 장학증서 수여, 장학금 반환 및 환수, 장학금 수혜에 따른 의무사항 및 어업·어촌 비전특강 등 교육
- 신청 및 이수방법 : 일괄 신청(재단) → OT 참석확인 및 이수처리(재단)

### □ 현장실습교육 및 온라인교육

#### 1) 현장실습교육

- (기초) 어업 및 수산분야 정책, 취창업계획서 작성법 등 기초 종합교육
- (심화) 현장 중심 멘토링 및 취·창업 교육
  - 창업교육 :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마인드셋, 실무적 지식, 미래 산업 트렌드 이해, 사업계획서 작성 등 역량강화 중심 교육
  - 취업교육 : 어업, 어촌, 수산분야 현황, 커리어 개발 방향 등 교육을 위해 취업 전문가 컨설팅 및 사회 진출교육

#### 2) 온라인 교육(필요시)

- 어업·어촌에 대한 품목교육 및 어업 전반적인 이해
- 품목교육, 창업교육, 어업경영·마케팅 교육 등의 온라인 교육을 통해 수산 산업 심화학습
  -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한국어촌어항공단 등에서 제공하는 사이버·온라인교육

#### 3) 신청 및 이수방법 : 일괄 교육프로그램 신청(재단) → 실습교육(학생) → 이수 처리(재단)

□ 보험가입 : 참여기간 동안 행사 및 교육생 보험 가입이 원칙이며, 의무교육 보험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보험가입 절차에 따라야 함(미가입시 현장교육 참여 불가)

□ 의무교육 미이수자 : 향후 1년간 장학금 신청자격 상실

- ※ 의무교육 미이수 시 해당학기 학업장려금 미지급
- ※ 미이수 처리기준 : 무단지각, 무단결석, 수업태도 불량, 개인행동 및 일탈 행위, 그 밖의 재단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된 교육 미인정자
- ※ 해당학기 의무교육을 미이수하더라도 이전 학기에 받은 장학금 수혜기간만큼 의무 종사는 이행하여야 함

□ 교환학생 : 대체교육으로 온라인교육 20시간 이수 필수



## VIII

## 의무종사 인정범위 및 이행

## 1 개요

- (의무종사) 장학금 수혜자가 해양수산부 및 재단에서 인정하는 어업 및 수산분야에서 취업 또는 창업하여 종사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의무종사 기간) 장학금 수혜횟수(학기) × 6개월(180일)
  - (취업) 졸업 후 어업 및 수산분야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
    - \* 취업 인정은 졸업예정 마지막 학기부터 적용(정규학기 기준)
  - (창업) 선발 이후 다음 기준에 부합하는 창업상태 유지 기간
    - 졸업 후 창업을 기본으로 하나,
    - 재학 중 신규 창업, 어업법인체 창업(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어업 및 수산업 분야 산업체 등)은 창업매출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 인정
      - \* 재학 중 전자상거래 창업은 미인정
      - \* 창업 후 폐업하여 취업한 경우에도 창업이 인정되는 기간은 의무종사 기간으로 인정
- (의무종사 범위) 어업인 취·창업,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어업 및 수산업분야 산업체(어촌지역)에 취·창업을 대상으로 함
  - \* 어업 및 수산업 분야 산업체의 경우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 제6항」에 의한 어촌기준 적용
- (미이행 시) 총 의무종사기간 대비 잔여의무 종사 기간비율만큼 지원된 장학금(등록금 및 장려금) 반환·환수

## 2 의무종사 인정 절차

## □ 인정대상(관련법령 참고3)

1.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수산업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취·창업
2.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 취·창업
  - \* 어업법인 :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한 법인에서 농업과 어업을 같이 하는 경우도 포함)
3. 어업 및 수산업 분야 산업체 취·창업
4. 기타 : 상기 이외에 해양수산부와 재단이 인정한 어업 관련 사업장 등 취·창업
  - ※ 재단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인정한 경우에 한함

## □ 인정범위(예시)

### < 어업분야 취업 >

|                                                                                                                                                                                                                                                                                                 |
|-------------------------------------------------------------------------------------------------------------------------------------------------------------------------------------------------------------------------------------------------------------------------------------------------|
| <p>① (어업인) 가족협업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취업자(지역제한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 어업인</li> <li>■ 어업인 확인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확인(어업경영체등록 등)<br/>※ 필요시 어업관련 추가 증빙 요청</li> </ul>                                                                                            |
| <p>② (어업법인)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판매 및 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는 어업법인 창업(지역제한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li> </ul>                                                                                          |
| <p>③ (어업 및 수산업 분야 산업체) 블루푸드 테크 연관, 어획, 양식 등 수산물 생산·유통·가공·소비 전과정을 첨단기술 접목한 산업영역에서 연관되는 산업에 취업(어촌지역 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블루푸드테크* 연관 산업에 취업하여 어업 및 수산업 분야 업무에 종사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br/>* 블루푸드테크 : 어획·양식 등 수산물 생산·유통·가공·소비 전과정을 첨단기술 접목한 산업영역에서 연관되는 산업</li> </ul> |
| <p>④ 기타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의 「장학사업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어업분야 사업체로 재단 이사장이 인정한 사업장(지역제한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③에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일 경우, 해양수산부와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이 인정한(운영위원회 심의) 어업생산 및 수산업 증진을 위한 분야 취·창업으로 인정되는 사업장 종사</li> </ul>                                                                  |

### < 어업분야 창업 >

|                                                                                                                                                                                                                                                                                          |
|------------------------------------------------------------------------------------------------------------------------------------------------------------------------------------------------------------------------------------------------------------------------------------------|
| <p>①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업 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지역제한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 어업인</li> <li>■ 어업인 확인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확인(어업경영체등록 등)<br/>※ 필요시 어업관련 추가 증빙 요청</li> </ul>               |
| <p>② (어업법인)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판매 및 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는 어업법인 창업(지역제한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li> </ul>                                                                                   |
| <p>③ (어업 및 수산업 분야 산업체) 블루푸드 테크 연관, 어획, 양식 등 수산물 생산·유통·가공·소비 전과정을 첨단기술 접목한 산업영역에서 연관되는 산업(어촌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블루푸드테크* 연관 산업에 취업하여 어업 및 수산업 분야 업무에 종사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br/>* 블루푸드테크 : 어획·양식 등 수산물 생산·유통·가공·소비 전과정을 첨단기술 접목한 산업영역에서 연관되는 산업</li> </ul> |
| <p>④ 기타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의 「장학사업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어업분야 사업체로 재단 이사장이 인정한 사업장(지역제한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③에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일 경우, 해양수산부와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이 인정한(운영위원회 심의) 어업생산 및 수산업 증진을 위한 분야 취·창업으로 인정되는 사업장 종사</li> </ul>                                                           |

## □ 인정 세부절차

## ○ 인정대상별 의무종사 지역, 산업범위 등 사항

| 인정대상            | 산업범위                        | 지역      | 관련내용                                                                    |
|-----------------|-----------------------------|---------|-------------------------------------------------------------------------|
| 어업인             | 제한없음                        | 해당없음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수산업기본법) 제3조 제3호 등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이 인정한 어업인                    |
| 어업법인            | 제한없음                        | 해당없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
| 어업 및 수산업 분야 산업체 | <b>블루푸드테크**</b><br>(전·후방산업) | 농어촌 지역* | 블루푸드테크 연관 산업에 취·창업하여 <b>어업 및 수산업 분야 업무에 종사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b> 하는 경우  |
| 기타              | -                           | -       | 해양수산부와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이 인정한(운영위원회 심의) 어업생산 및 수산업 증진을 위한 분야 취·창업으로 인정되는 사업장 종사 |

\* **어촌지역** :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읍·면의 전 지역 또는 동의 지역 중 일부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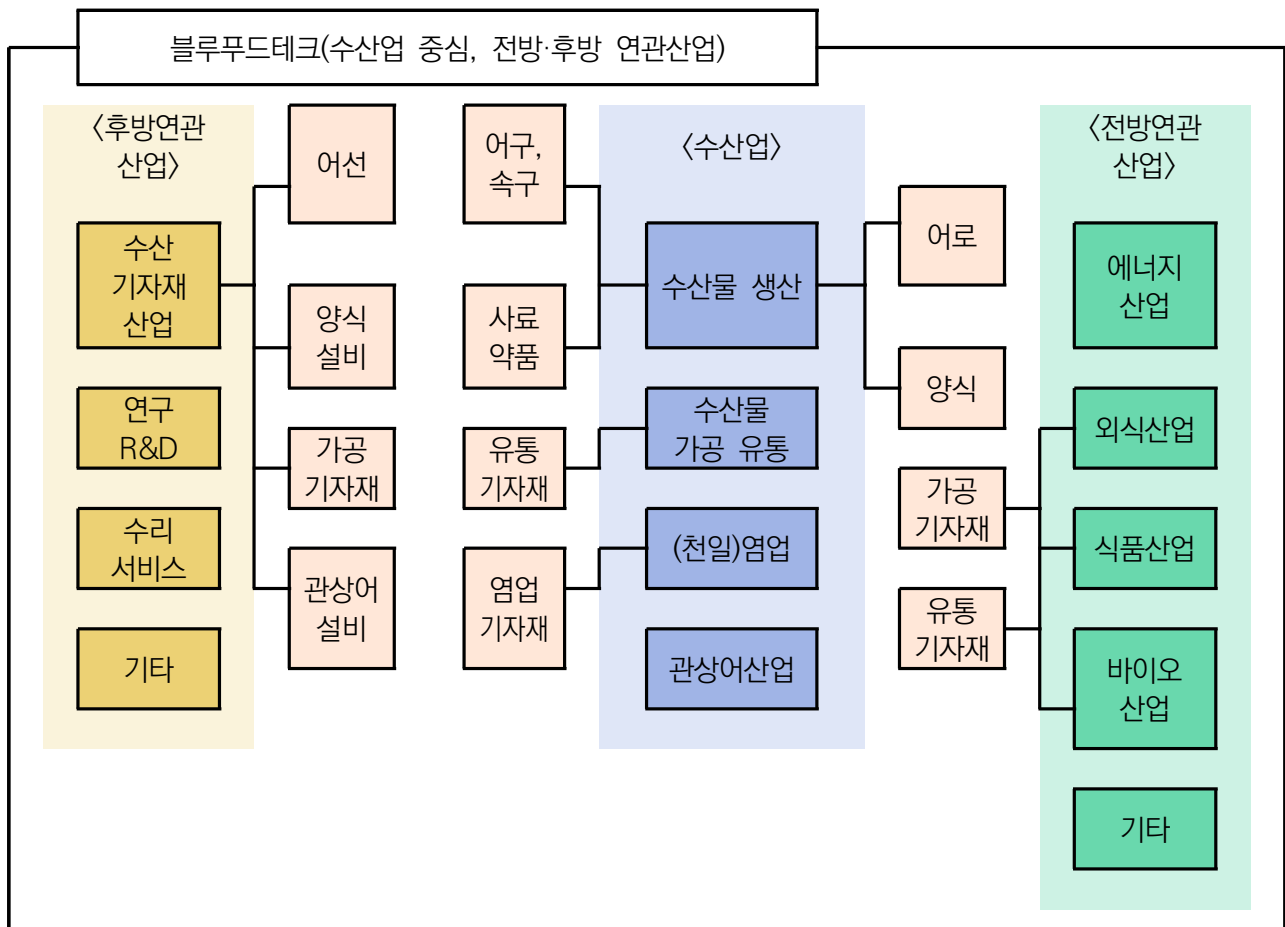
**농촌지역** : 읍·면의 지역 또는 그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의무종사 인정지역은 2026년 1학기 이전 장학생에게도 적용

\*\* **블루푸드테크(전후방산업)** : 어획·양식 등 수산물 생산·유통·가공·소비 전과정을 첨단 기술 접목한 산업영역에서 연관되는 전방 및 후방산업

## ○ 산업범위 분류

- 1) 산업 범위 구분이 필요 없는 ‘어업인’, ‘어업법인’은 산업 범위 구분 없이 인정
- 2) ‘어업 및 수산업 분야 산업체’의 경우는 블루푸드테크 연관 산업(어촌지역)에 취·창업한 경우 인정
  - 해당 산업체에 업무범위가 ‘어업 및 수산업에 종사’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업무’ 여부 확인
  - 어업 및 수산업 분야 업무에 직접 종사를 증명하는 서류(산업체 관련서류, 재직 증명 등)를 확인
  - 어업 및 수산업 분야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를 증명하는 서류(산업체 관련서류, 재직증명 등)를 확인



※ 「어업 및 수산업 분야 산업체(블루푸드 테크)」 전·후방 연관산업 인정예시

- ① 에너지산업체에서 스마트양식 기계화 설비, 수산가공 및 유통 기자재 설비 등을 병행하는 경우
- ② 외식산업체에서 수산식품 가공업, 어류 유통업 등 병행하는 경우
- ③ 식품 및 바이오 기타산업에서 수산물가공업, 활어유통업, 해수어류 양식업 등 병행하는 경우

(사례) 에너지산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 등본의 등기 목적(사업분야) 확인하여 어업 및 수산분야 업무에 종사하거나 이를 지원하는지를 확인함

※ 블루푸드테크 관련 어업 및 수산업 관련 업종인지 확인시 한국표준산업 분류표 등 활용(참고4)

## ○ 의무종사 인정 기준

| 인정대상            | 취업                                                                      | 창업                                                             |
|-----------------|-------------------------------------------------------------------------|----------------------------------------------------------------|
| 어업인             | (가족) 어업경영체(고용주외 어업인)등록                                                  | 어업경영체(경영주 본인)등록                                                |
| 어업법인            | 어업법인체 근무(재직)                                                            | 어업법인체 창업<br>(단, 의무종사 종료까지 창업매출액* 인정기준 부합 및 입증서류 제출시)           |
| 어업 및 수산업 분야 산업체 | 어업 및 수산업 분야 산업체 근무(재직)                                                  | 어업 및 수산업 분야 산업체 창업<br>(단, 의무종사 종료까지 창업매출액* 인정기준 부합 및 입증서류 제출시) |
| 기타              | 해양수산부 및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이 인정한(운영위원회 심의) 취·창업 근무(재직) 및 창업 서류 제출시 인정(적용시기) 여부 판단 |                                                                |

## \* 창업매출액 인정가능 기준(어업법인체 등 창업시)

- ①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6개월 60만원 이상)
- ② 공동창업은 공동창업자수 1인당 위 매출액 인정기준 적용하며, 공동창업은 법인 사업자에 한해 허용(예 : 2인 공동창업 시, 매출액 인정 기준 연 120만원 이상×2인)

※ 매출액 확인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중 택 1

※ 매출액은 상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며, 상품(기자재, 기타 용품 등) 매입에 대한 매입액은 미인정

※ 의무종사 시작일의 경우 매출액 확인자료 제출 시 매출이 발생한 시점부터 인정

- ③ ①의 기준을 충족한 자가 특허 또는 실용신안 취득증빙을 제출하는 경우, 추가로 의무종사기간 인정(특허 등록 6개월, 실용신안 등록 3개월) 단, 각 1회씩만 인정

\*\*\* 재단은 수산 및 어업 및 수산분야 산업체 등 취업자에게 고용계약서 등 필요시 추가 증빙자료 제출요구 가능

### 3 } 의무종사 이행 및 보고

#### □ 졸업 후 의무종사 대상자 지정

- (졸업자 등록) 대학은 장학금 수혜자 졸업 시점에 재단 장학시스템에 졸업자를 등록 하여야 함
  - 졸업자 등록은 재단의 '사후관리를 위한 학적정보 등록요청'에 따라 지정한 기한 내에 실시
- (의무종사 안내) 재단은 졸업자 등록 확인 후 의무종사 이행 안내(메일·문자 발송)

#### □ 의무종사 이행 및 보고

- (의무종사 이행보고) 장학생은 졸업 후 취업 또는 창업(재학 중 창업 포함)하여 의무 종사를 개시한 경우 시작보고를 하여야 하며, 의무종사를 마친 후 완료보고를 하여야 함
  - \* 의무종사 보고는 장학금 수혜자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시

#### □ 시작보고

- 의무종사 대상자는 의무종사 대상 등록일(졸업, 수료, 자퇴, 편입 등)부터 **6개월(180일) 이내에 의무종사 시작을 장학시스템에 등록(보고)**
  - \* 단, 재학 중 창업의 경우 창업시점에 학교를 통해 시스템상 사용권한을 받은 후 등록보고
  - \* 최종 학적변동(졸업, 수료, 자퇴, 편입 등) 일자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증 보험기간을 재산정함
- 시작보고 시 장학시스템에 등록된 본인의 개인정보와 수혜현황 및 의무종사일 확인 (수정) 후 의무종사 시작(또는 유예) 보고(신청)
- 시작(또는 유예)보고 시 증빙서류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재단에서는 시작보고사항 검토 후 승인(또는 반려·보완요구)처리하며, 의무종사 대상 자는 장학시스템에서 이 내용을 확인 후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여야 함

#### □ 완료보고

- 의무종사자는 의무종사를 완료한 경우, 의무종사 종료일 기준 **3개월(90일) 이내에 장학시스템에 등록(보고)**
- 의무종사 완료보고 시, 의무종사 이행정보 보고 및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재단에서는 완료보고 사항검토 후 승인(또는 반려·보완 요구)처리하며, 의무종사자는 보완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여야 함
- 이행 기간 산정 : 의무종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취업기간 또는 창업(매출액 인정 기준 이상 유지기간)을 일수로 합하여 30일을 1개월로 하여 의무종사 기간 산정

## □ 변동사항보고

- 의무종사 이행 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동사항 발생 다음 날부터 1개월(30일) 이내 장학시스템에 등록(보고)

\* 1개월 이내 미등록 시 불이행자로 지정, 장학금 환수자로 지정될 수 있음.

- 변동사항 보고 시, 추가 및 수정사항 등록(보고) 및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 의무종사(시작·변동·완료) 보고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사항

- 이행 단계별 보고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무종사 포기자로 간주되어 반환 또는 환수 대상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감안, 보고(등록)에 유의해야 함

\* 개인정보(전화번호, 주소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1개월 이내 변경해야 하며, 미변경 시 장학금 환수자로 지정될 수 있음

## □ 의무종사 인정서류 및 적용일

- 시작·변동사항보고 증빙 제출서류

| 구분              | 취업                                                                                                                                                 | 창업                                                                                                                                                                                                                                                   |
|-----------------|----------------------------------------------------------------------------------------------------------------------------------------------------|------------------------------------------------------------------------------------------------------------------------------------------------------------------------------------------------------------------------------------------------------|
| 어업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어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고용주외 어업인)</li> <li>■ 가족관계증명서</li> <li>■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고용주 본인)</li> <li>■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li> </ul>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선원부, 어업허가증(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li> <li>■ 어업신고필증, 어업경영체, 어업면허증</li> </ul>                          |
| 어업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li> <li>■ 사업자등록증</li> <li>■ 법인등기부등본</li> <li>■ 4대보험가입증명서</li> <li>■ 가족관계증명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고용주 본인)</li> <li>■ 사업자등록증</li> <li>■ 법인등기부등본</li> <li>■ 4대보험가입증명서(해당자)</li> <li>■ 매출액 확인자료</li> </ul>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취득 (해당자)</li> </ul> |
| 어업 및 수산업 분야 산업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등록증</li> <li>■ 법인등기부등본</li> <li>■ 4대보험가입증명서</li> <li>■ 가족관계증명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등록증</li> <li>■ 법인등기부등본</li> <li>■ 4대보험가입증명서(해당자)</li> <li>■ 매출액 확인자료</li> </ul>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취득 (해당자)</li> </ul>                                      |
| 기타              | 해양수산부 및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이 인정(운영위원회 심의)할 경우(법적증빙서류 상 등록 및 개업일부터) 여부 판단                                                                                     |                                                                                                                                                                                                                                                      |



## ○ 완료보고 시 증빙 제출서류(완료시점 발급 서류에 한함)

| 구분              | 취업                                                             | 창업                          |
|-----------------|----------------------------------------------------------------|-----------------------------|
| 어업인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어업법인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br>■ 매출액 확인자료 |
| 어업 및 수산업 분야 산업체 |                                                                |                             |
| 기타              | 해양수산부 및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이 인정(운영위원회 심의)할 경우(법적증빙서류 상 등록 및 개업일부터) 여부 판단 |                             |

## ○ 의무종사 기준 적용일

| 구분              | 취업                                                             |                                                  | 창업      |                                                 |
|-----------------|----------------------------------------------------------------|--------------------------------------------------|---------|-------------------------------------------------|
|                 | 시기                                                             | 적용일 기준                                           | 시기      | 적용일 기준                                          |
| 어업인             | 졸업                                                             | (가족) 어업경영체 최초등록일부터~<br>(경영주 외 어업인)               | 졸업      | (본인) 어업경영체 최초등록일부터<br>(경영주)~                    |
|                 | 재학                                                             | (졸업예정 마지막학기) 어업경영체<br>최초등록일부터(경영주 외 어업인)~        | 재학      | (장학수혜 후 차기학기부터)<br>(본인) 어업경영체 최초등록일부터<br>(경영주)~ |
| 어업법인            | 졸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br>직장의료보험가입일부터~                    | 졸업      | (장학수혜 후 차기학기부터)<br>(본인) 사업자등록 상 개업일부터~          |
|                 | 재학                                                             | (졸업예정 마지막학기 부터)<br>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br>직장의료보험가입일부터~ | /<br>재학 | * 창업매출액 인정가능시                                   |
| 어업 및 수산업 분야 산업체 | 졸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br>직장의료보험가입일부터~                    | 졸업      | (장학수혜 후 차기학기부터)<br>(본인) 사업자등록 상 개업일부터~          |
|                 | 재학                                                             | (졸업예정 마지막학기 부터)<br>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br>직장의료보험가입일부터~ | /<br>재학 | * 창업매출액 인정가능시                                   |
| 기타              | 해양수산부 및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이 인정(운영위원회 심의)할 경우(법적증빙서류 상 등록 및 개업일부터) 여부 판단 |                                                  |         |                                                 |

## □ 의무종사 유예

- (정의) 의무종사 대상 장학생이 의무종사를 할 수 없는 사유(일정 기준에 따름)가 발생할 경우 의무종사를 일정기간 미루는 것
- (유예기간) 졸업 후 취·창업 준비기간(6개월, 180일)이 경과한 후부터 최대 2년(24개월)까지 가능
  - 유예기간은 졸업 후 6개월(180일) 경과부터 의무종사 미이행 기간을 누적하여 산정  
(\* 유예기간은 졸업 및 졸업유예, 자퇴, 수료 시점부터 적용)



- **(유예신청)** 유예신청은 12개월(360일)마다 장학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유예가능 사유 및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유예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졸업 후 6개월 경과시점 및 그 후 12개월(360일) 단위(단위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 하여야 함
  - 재단은 유예신청사항을 검토 후 승인(또는 반려·보완요구) 처리하고 총 유예기간 최대 2년 초과 시에는 반환대상자로 지정·관리
- **(유예기준)** 유예는 다음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의무종사 유예 가능 사유 및 증빙서류】**

| 신청사유     | 증빙서류                                     | 비고                                    |
|----------|------------------------------------------|---------------------------------------|
| 취업·창업 준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최대 24개월<br>(사유 중복<br>적용 불가,<br>1회 한함) |
| 창업 준비    | 어업창업 및 어업정착 준비와 관련된 서류(사업장 인허가 등)        |                                       |
| 학업유지     | 학업유지 관련 증빙 서류[졸업생(대학원 진학 가능), 재학생(편입불가)] |                                       |
| 기업도산     | 도산 확인 가능 서류                              |                                       |
| 이직·퇴사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자격 확인서류(택 1)           |                                       |
| 질병·상해    | 진단서                                      | -                                     |
| 기타       | 그 밖에 재단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          |                                       |

- **(추가유예인정)** 2년을 초과해 의무종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 재단은 졸업 후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승인을 통해 인정(보험가입 기간을 초과하여 유예할 경우 추가 보험가입 필수)

**【의무종사 추가유예 가능 사유 및 증빙서류】**

| 신청사유  | 증빙서류                             | 비고                                                         |
|-------|----------------------------------|------------------------------------------------------------|
| 군입대   | 입영통지서, 입영사실확인서,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택1) | 기본 유예 24개월 이외<br>추가 인정되는 사유이며,<br>최대 5년범위 내에서<br>승인을 통해 인정 |
| 임산·출산 | 진단서,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택1)  |                                                            |
| 천재지변  | 천재지변 확인 가능서류                     |                                                            |
| 기타    | 그 밖에 재단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  | -                                                          |

## ○ (유의사항) 유예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승인 후 진행하여야 함

- 의무종사 이행 및 유예, 휴학, 장학금반환 등은 보증보험가입기간 내에서만 처리가능
- 유예기간은 의무종사 기간 미산입 및 상기 외 미취업, 미창업, 편입은 전액 반환 대상
- 상기 유예사유로 인해 당초 의무종사 시작보고가 변동된 경우 변동사항 보고 대상임
- 어업분야 창업 의지가 있는 장학생이 인프라 구축, 자금 부족, 미수익 등 공백 기간으로 유예기간 소진(최대 2년) 후에도 실적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의무종사 이행계획(유예연장)서를 제출하고 재단 승인을 받아 최대 2년 연장 가능

## □ 의무종사 포기

- (신청방법) 의무종사를 포기하고자 하는 장학생은 재단에서 제공하는 의무종사 포기 신청서 제출
- (장학금 반환) 의무종사 이력이 있는 경우, 의무종사 잔여일수를 반영하여 반환금액 산정 (※ X.장학금 반환 참고)

$$\blacksquare \text{ 반환금액} = (\text{총 수혜 장학금}^*) \times (\text{잔여의무종사일수} / \text{총 의무종사일수}^{**})$$

\* 장학금 = 등록금 + 학업장려금

\*\* 총 의무종사일수 = 장학금 수혜횟수(학기) × 180일(6개월)

## □ 의무종사 미이행 처리기준

- 의무종사 유예기간 만료 시까지 의무종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의무종사를 포기한 경우
  - 보증보험 가입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반환약정체결 후 반환 또는 환수처리
  - 분할 납부자는 매월 25일 정산금액 반환

## IX 의무종사 이행 점검 및 사후 관리

### □ 목적

- 졸업 후 어업 및 수산 산업체 의무종사 기간 중 이행여부 확인 및 이후 어업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취창업 현황 파악 등 관리

### □ 이행점검 추진 방향

- 장학생 선발 시 서약 및 수혜 기간 동안 의무종사 이행 사항 교육·안내
- 장학관리시스템(대상자 DB) 구축하여 의무종사 이행관리 및 어업 정착상황 등 관리 (의무종사 관리 완료시까지)
- 어업과 어업 법인체를 구분하여 이행점검 관리

| 직업군         | 이행점검                                                                                                                                                                                                                                  |
|-------------|---------------------------------------------------------------------------------------------------------------------------------------------------------------------------------------------------------------------------------------|
| 어업<br>(어업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행보고 제출서류 및 어업경영체 등록 여부(지방해양수산청 협조) 확인</li> <li>■ 어업인확인서 확인<br/>※ 확인서는 어업인 요청 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어업사실여부 확인 후 발급</li> <li>■ 권역별 현장점검단을 구성하여 이행점검 및 컨설팅 실시<br/>※ 본인 120만원 판매실적, 60일 조업실적</li> </ul> |
| 어업법인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대보험 가입 증명서 등 증빙서류</li> <li>■ 관리대상자 : 권역 현장점검단·재단을 통한 이행 점검<br/>* 단, 부모가 대표로 있는 사업장 취업자, 공동창업자 등은 100% 불시점검</li> </ul>                                                                       |

- 단계별·관리대상별로 구분하여 현장 점검
  - 현장점검단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구성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 대상 | 전체<br>(100%)              | 1차 관리 대상*<br>(5~10%) | 2차(집중) 관리 대상<br>(10%) |
| 절차 | 서류·유선 확인                  | 현장 점검                | 현장 점검                 |
| 방법 | (어업) 관련기관 협조              | ■ 어업인확인서 제출          | ■ 해수부·재단              |
|    | (취업) 4대보험 가입 등<br>증빙서류 확인 | ■ 해수부·재단<br>■ 현장점검단  |                       |

\* 점검 대상 인원 : (1단계) 연차별 의무종사 대상인원 100% → (2단계) 약 5~10% → (3단계) 최대 약 10% (졸업생 의무종사 현황에 따라 인원 변동가능)

- 졸업자는 취·창업 서류 확인 후, 2·3단계 현장점검 실시계획

- 어업 및 어업 법인체 취·창업 지원제도 및 채용정보 제공, 초기 취·창업자에 대한 시행착오 최소화, 조기 경영안정화 등을 위해 컨설팅 지원
  - 취창업 지원사업 : 청년어업인 관련 사업, 행안부·지자체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
  - 어업법인, 어업 관련 산업체 채용정보를 수집하여 제공
  - 의무종사자의 어업분야 진출 확대를 위해 의무종사 가능 기업 매칭 취업 컨설팅 지원

## □ 이행점검 방법

### ① 장학관리시스템 운영(대상자 DB 구축)

- 장학생 선발에서 졸업 후 의무종사 이행관리 등 장학사업 전반의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시스템 학생 및 관리자 페이지 구축·운영
- 의무종사 대상자는 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무종사 시작보고, 완료보고 등 확인 점검 체계 유지

\* 재단은 사전에 의무종사 대상자에게 이행사항 등 사전안내 및 고지(SMS 등)

### ② 서류 확인(1단계)

- (어업종사자) 어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기관과 대조 확인
- (어업분야 취·창업자) 4대보험 가입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확인

### ③ 현장 확인(2단계)

- (현장점검단 운영) 의무종사 진행중인 자의 5~10%(1단계 확인결과 서류미비자, 의심자) 수준에 대해 현장점검단이 현장점검, 의무종사실태 및 성과 분석

| 구분   | 내용                                       |
|------|------------------------------------------|
| 운영방식 | 재단 점검단이 직접 점검(5개 권역 구성)                  |
| 점검시기 | 반기별 1회(상반기 3~5월, 하반기 9~11월), 연중 1회는 불시점검 |
| 결과제출 | 현장 확인 결과를 종합, 의무종사 실태 및 성과분석 보고서 제출      |

- (어업종사자) 현장과 어업경영체 대조 확인
- (어업분야 취·창업자) 취·창업 사업장 현장 방문 및 의무종사 현황 확인점검

\* 단, 부모가 대표로 있는 사업장 취업자, 공동창업자 등은 100% 불시점검

## ④ 최종 확인(3단계)

- 재단에서 서류 및 현장 확인점검 결과 등을 종합 검토
- 집중 관리대상자에 대해 추가 현장 확인 점검 실시
  - \* (어업종사자) 2단계에서 어업경영체 미제출시 현장 방문점검
  - \* (어업분야 취·창업자) 재단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점검
  - \* 4대보험 미가입 기업 취·창업자, 시스템 등록 내용과 현장 확인점검 내용이 상이한 경우 등
- 의무종사자가 이행점검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재단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반환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음

**【참고】 유사 장학금 이행점검 관리방안**

## ■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취업연계 희망사다리 장학금(의무종사 6개월~2년)

- 대부분 4대보험 가입증서로 의무종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4대 보험 미가입자는 고용 계약서 등으로 확인
- 별도 의무종사 이행에 따른 현장 확인 등 조치는 없음
- 의무종사 대상인원은 연 10,000명 수준(2020년 기준) \* 학기당 3,700여명 선발

## ■ 한국농수산대학(의무종사 6년)

- 의무종사 대상인원은 연 3,000명 수준으로 지속적인 이행 점검 필요
- 지자체에서 이행 점검하여 한국농수산대에 보고



## 장학금 반환 및 환수

### 1 재학 중 장학금 반환

#### □ 재학 중 반환사유

- 학교의 징계처분으로 인해 제적된 자
- 의무종사 이행계획이 없어 장학금을 포기하는 자
- 자퇴, 편입 등 학적소멸된 자 또는 장학생 선발 후 휴학 3년 초과된 자의 경우,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며, 자격상실 해당학기 장학금은 반납하고, 그 이전 수혜 장학금은 반환 또는 의무종사 선택 가능

※ 장학금 포기 시 포기확인서(붙임6)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

#### □ 재학 중 반환절차

- (대학→장학생) 반환사유, 금액, 반환기한 등을 표시하여 반환 안내
- (장학생→대학) 장학금 반환 실시
- (대학→재단) 학생에게 반환받아 재단으로 입금 및 관련 공문 안내

### 2 졸업 후 장학금 반환

#### □ 졸업 후 반환사유

- 재단에서 인정하는 의무종사 유예 완료시기(최대 2년)까지 의무종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의무종사 이행을 포기한 경우

## □ 졸업 후 반환절차

- (재단→장학생) 반환사유, 금액, 반환기한 등을 표시하여 반환 안내
- (장학생→재단) 재단 장학시스템에서 반환사유, 금액, 납부방법(일시, 분할) 등을 표시하여 반환약정체결 신청  
(최대 반환약정기한은 보증보험 기간만료일 1개월 이전까지 가능)  
※ 반환 약정 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접수
- (재단→장학생) 반환약정체결 신청 검토 및 약정체결 결과 통보
- (장학생→재단) 반환약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반환

## □ 반환 금액 산정

- 수혜받은 장학금에 총 의무종사일수 중 실제 종사한 기간을 반영하여 반환·환수금액 산정

- 반환·환수 금액 = (총 수혜 장학금\*) × (잔여의무종사일수 / 총 의무종사일수)
- \* 장학금 = 등록금 + 학업장려금
- \*\* 총 의무종사일수 = 장학금 수혜횟수(학기) × 180일(6개월)

##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반환대상자는 보증보험기간 만료 1개월 이전 범위 내에서 일시반환약정서를 제출하고 지정한 날짜에 장학금 전액 상환(상환예정일에 일시상환하지 않은 경우, 환수대상자로 지정)
- 상환예정일에 일시상환이 어려운 경우, 상환예정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보증보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날짜 및 상환방법 변경 가능  
(단, 약정일부터 90일 이내에 변경가능하며, 재단이 승인한 건에 한해 효력 인정)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 방법변경을 선택할 수 없음
  - \* 국적을 변경한 경우
  - \* 약정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 그 밖의 재단이 분할상환 승인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분할상환

- 반환대상자는 장학금 분할반환약정서를 제출하고, 약정한 기간 내에 장학금을 분할 상환 (3개월 이상 연체 시 분할상환 중지되며 환수대상자로 지정)
- 최대 36개월까지 매월 장학금을 분할 상환가능  
(단, 보증보험기간 만료 1개월 이전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기간 설정가능)
- 월상환금의 원 단위 이하 금액은 최종 상환일(마지막 회차 상환금 납부일)에 합산 처리
- 분할상환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분할 상환기간 내에 변경 가능  
(단, 재단 승인 건에 한해 효력 인정)

## 3 장 장학금 환수

### □ 환수대상자 지정 및 통보

- **(환수대상자 지정)** 장학생이 반환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또는 반환약정은 체결했으나 반환약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환수대상자로 지정
- **(환수대상자 통보)** 재단은 장학생에게 환수 기한, 환수금액, 환수절차 등을 기재한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

\* 재단은 발송 후 7일 간격으로 2회까지 안내할 수 있으며, 재단이 정한 보증보험 청구일 또는 민사 소송 절차 개시일 14일 이전까지 통보 완료함

### □ 환수절차 진행

- **(환수금 납부)** 장학생이 환수대상자 통보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한 경우 환수절차 종료  
\* 환수금 납부 기한 내 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될 경우, 만료일 기준 30일 전까지 환수금 납부 시 환수 절차 종료
- **(보험금 청구 및 소송진행)** 장학생이 환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 청구 및 민사소송 절차로 환수 이행  
\* 재단이 보증보험사로 보험금 청구 시 장학생에게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 발생  
\* (보험금 청구) 장학생이 반환(환수)절차 불이행 시, 보증보험사에서 재단으로 반환(환수)금을 대납하고 보험사가 장학생에게 구상권 행사



#### 4 > 반환·환수 면제

##### □ 장학생에게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학금 반환 및 환수 면제 가능

- 장학생이 사망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이에 준하는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장학금 반환(환수)을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 장학금 수혜일자(장학생 선발 최종발표일) 이후 장애, 질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면제 대상임. 특히, 장애·질병 판정일(증명서류 상 등록일자 기준) 이후 받은 장학금에 대한 의무종사는 면제대상이 아님

## XI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목적) 청년창업어업인 장학사업의 세부 운영에 관한 심의기구로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 (구성) 해양수산부 담당자, 재단 사무총장, 대학학장(수산계대학), 청년창업 전문가, 수산 전문가 및 관련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등 총 7명 내외로 구성
  - 위원장은 재단 사무총장이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
- (기능) 청년창업어업인장학금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 또는 개선방안 논의
 

1. 장학생 선발·심사 기준에 관한 사항
  2. 의무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3. 의무종사 범위 및 유예 여부에 관한 사항
  4. 반환·환수 대상자 지정, 이의신청 및 환수 유예 기간 등에 관한 사항
  5. 장학생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청년창업어업인 장학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운영) 연간 1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
  - 대면 심의·의결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서면으로 대체 가능
  - ※ 운영위원회 규정(안) : 붙임5
- 기타 장학금 지원사업 관련 업무회의 등 운영

## XII 홍보 계획

### 1 추진 방향

- ☐ 장학금 수혜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활용 홍보
- ☐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장학금 사업에 이해 도모 및 참여 제고

### 2 수혜 학생 대상 중점 홍보

#### 가. 장학금 인식 제고 방안

- ☐ (포스터, 현수막) 매 학기 선발시기에 전국 대학교(6개) 교내·외 게시
  - 제작 및 배포 수량 : 포스터 100부 내외
  - \* 학과 게시판, 수산계 대학 강의실, 학생 식당, 학교 대자보 등 게시

#### 나. 모바일 문자메시지 발송

- ☐ 전국 1~4학년 학생 대상 안내 문자 발송(대학 관계자→학생)
  - \* 대학관계자 : 장학담당, 학과 조교, 창업지원 담당자 등
- ☐ 최근 4개년 舊 수산후계 및 청년창업어업인 대학장학금 신청 이력이 있는 학생 대상 (약 3,000명) 홍보 문자 발송(재단→학생)

#### 다. 온라인 홍보

- ☐ 각 대학 및 학과,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장학 안내 배너(이미지·포스터 등 홍보 콘텐츠) 제공하여 게시
- ☐ 장학금 신청 시 홍보물(영상, 포스터)를 학생들이 접하기 쉬운 SNS 홍보를 통해 관심도 제고

### 3 > 교수 및 교직원 대상 홍보

- ☐ 교직원(장학담당자) 및 조교 등에게 전자공문, 이메일 등을 통한 홍보 협조 요청
- ☐ 온라인 리플릿 제작·배포(전국 대학교)

### 4 > 대국민 홍보

- ☐ 전국 지자체 수산정책 및 청년정책과(이장단 협의회, 어촌계 등), 어업 관련 기관·단체\* 등에 안내문 발송을 통한 홍보 협조 요청
  - \* 지역수협(조합, 조합원 학부모), 한국정책방송원(KTV) 등
- ☐ 보도자료 배포 등 실시
- ☐ 우수사례 등 영상제작 및 다양한 매체 홍보를 통한 어업분야 인식 개선

### XIII

## 추진일정 (일반사항이며, 실제 일정은 공고서에 별도 안내)

| 구분              | 주요 내용                                                                                | 추진 주체                | 시기                         |                            |
|-----------------|--------------------------------------------------------------------------------------|----------------------|----------------------------|----------------------------|
|                 |                                                                                      |                      | 1학기                        | 2학기                        |
| 운영위원회           | ■ 운영위원회 개최                                                                           | 농어촌희망재단              | 2025년말~2026년초              |                            |
| 세부추진 계획         | ■ 2026년 계획수립                                                                         | 해양수산부<br>농어촌희망재단     | 2025년말~2026년초              |                            |
| 홍보              | ■ 포스터·현수막 게시(대학, 학과)<br>■ 모바일 문자메시지 발송                                               | 농어촌희망재단              | 2025.12월 중순~<br>2026.1월 중순 | 2026.6월 중순 ~<br>2026.7월 중순 |
| 학과정보 등록         | ■ 학교정보(학교명, 사업자번호, 장학 재단코드, 담당자, 통장사본 등) 등록<br>■ 학과정보 등록<br>* 미등록 시 해당학과 학생 장학금 신청불가 | 농어촌희망재단<br>대학        | 2025.12월 중순                | 2026.6월 중순                 |
| 사업공고            | ■ 장학생 선발공고(재단 홈페이지)                                                                  | 해양수산부<br>농어촌희망재단     | 2025.12월 중순                | 2026.6월 중순                 |
| 신청·접수           | ■ 한국농어촌희망재단에 신청<br>(재단홈페이지 내 장학시스템에서 신청)                                             | 신청학생                 | 2025.12월 말 ~<br>2026.1월 중순 | 2026.6월 말 ~<br>2026.7월 중순  |
| 장학생 추천          | ■ 자격요건(학적, 성적, 이수학점) 검토                                                              | 대학                   | 2026.1월 중순                 | 2026.7월 중순                 |
| 서류심사            | ■ 서류심사 준비 및 진행<br>* 정량심사(재단)+정성심사(심사위원)                                              | 농어촌희망재단<br>심사위원      | 2026.1월 말 ~<br>2026.2월 초   | 2026.7월 말 ~<br>2026.8월 초   |
| 계속장학생 보증보험 가입기간 | ■ 보증보험 개인정보동의<br>(한국농어촌희망재단: 전자서명)                                                   | 심사선발 학생<br>(농어촌희망재단) | 2026.1월 말 ~<br>2026.2월 초   | 2026.7월 말 ~<br>2026.8월 초   |
| 우선선발 대상 발표      | ■ 우선선발대상자 발표(재단 홈페이지)                                                                | 농어촌희망재단              | 2026.2월 초                  | 2026.8월 초                  |
| 보증보험 가입기간       | ■ 보증보험 개인정보동의<br>(한국농어촌희망재단 : 전자서명)                                                  | 심사선발 학생<br>(농어촌희망재단) | 2026.2월 초                  | 2026.8월 초                  |
| 최종 발표           | ■ 최종선발 및 결과발표<br>(재단 홈페이지 및 소속대학)                                                    | 농어촌희망재단              | 2026.2월 중순                 | 2026.8월 중순                 |
| 장학생 학적 등록       | ■ 학생 학적사항 확인, 등록<br>* 미등록 또는 등록오류 시 학생 장학금 지급불가                                      | 대학                   | 2026.2월 중순                 | 2026.8월 중순                 |
| 장학금 지급          | ■ 장학금 지급(학기별)<br>* 등록금: 재단→대학→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직접입금<br>* 학업장려금: 재단→대학→학생에게 직접입금        | 농어촌희망재단<br>소속대학      | 2026.2월 중순                 | 2026.8월 중순                 |
| 의무교육            | ■ 오리엔테이션(5시간) 및 의무교육                                                                 | 농어촌희망재단              | 2026.2월 말~<br>5월 중순        | 2026.8월 말~<br>11월 중순       |
| 정산보고            | ■ 장학금 정산보고 제출(대학→재단)                                                                 | 농어촌희망재단<br>대학        | 2026.5월 말                  | 2026.11월 말                 |

※ 향후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신청연기 및 추가접수 등)

## 붙임 1 장학금 지원대상 대학명단

※ 아래 수산계 대학 소속 수산계열학과 재학생에 한해 청년창업어업인장학금 지원 가능

□ 6개교, 6개 단과대학, 61개 학과(\* 학교 학칙변경에 따른 학과 추가)

| 연번 | 학교명       | 단과대학명      | 학부명        | 학과명                     |
|----|-----------|------------|------------|-------------------------|
| 1  | 경상국립대학교   | 해양과학대학     | -          | 미래산업융합학과                |
| 2  | 경상국립대학교   | 해양과학대학     | -          | 수산생명의학과                 |
| 3  | 경상국립대학교   | 해양과학대학     | -          | 스마트에너지기계공학과             |
| 4  | 경상국립대학교   | 해양과학대학     | -          | 해양생명과학과                 |
| 5  | 경상국립대학교   | 해양과학대학     | -          | 해양환경공학과                 |
| 6  | 경상국립대학교   | 해양과학대학     | -          | 기계시스템공학과                |
| 7  | 경상국립대학교   | 해양과학대학     | -          | 해양식품공학과                 |
| 8  | 경상국립대학교   | 해양과학대학     | -          | 해양수산경영학과                |
| 9  | 경상국립대학교   | 해양과학대학     | -          | 해양경찰시스템학과               |
| 10 | 경상국립대학교   | 해양과학대학     | -          | 조선해양공학과                 |
| 11 | 경상국립대학교   | 해양과학대학     | -          | 해양토목공학과                 |
| 12 | 경상국립대학교   | 해양과학대학     | 해양식품생명의학부  | 해양식품생명의학부               |
| 13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 생명과학대학     | -          | 해양생태환경학과                |
| 14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 생명과학대학     | -          | 수산생명의학과                 |
| 15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 생명과학대학     | -          | 해양생명과학과                 |
| 16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 생명과학대학     | -          | 해양바이오식품학과               |
| 17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 생명과학대학     | -          | 해양식품융합전공<br>(해양바이오식품학과) |
| 18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 생명과학대학     | -          | 해양바이오전공<br>(해양바이오식품학과)  |
| 19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 생명과학대학     | -          | 해양융합학과                  |
| 20 | 국립군산대학교   | 해양바이오특성화대학 | -          | 해양생물자원학과                |
| 21 | 국립군산대학교   | 해양바이오특성화대학 | -          | 수산생명의학과                 |
| 22 | 국립군산대학교   | 해양바이오특성화대학 | -          | 해양생명과학과                 |
| 23 | 국립군산대학교   | 해양바이오특성화대학 | -          | 식품영양학과                  |
| 24 | 국립군산대학교   | 해양바이오특성화대학 | -          | 식품생명공학과                 |
| 25 | 국립군산대학교   | ICC특성화대학부  | -          | 해양경찰학부                  |
| 26 | 국립군산대학교   | 해양바이오특성화대학 | -          | 기관공학과                   |
| 27 | 국립군산대학교   | 해양바이오특성화대학 | -          | 해양수산공공인재학과              |
| 28 | 국립부경대학교   | 수산과학대학     | -          | 생물공학과                   |
| 29 | 국립부경대학교   | 수산과학대학     | -          | 수산생명의학과                 |
| 30 | 국립부경대학교   | 수산과학대학     | 해양수산경영경제학부 | 자원환경경제학전공               |

| 연번 | 학교명     | 단과대학명  | 학부명         | 학과명          |
|----|---------|--------|-------------|--------------|
| 31 | 국립부경대학교 | 수산과학대학 | 식품과학부       | 식품과학부        |
| 32 | 국립부경대학교 | 수산과학대학 | 식품과학부       | 식품영양학전공      |
| 33 | 국립부경대학교 | 수산과학대학 | 식품과학부       | 식품공학전공       |
| 34 | 국립부경대학교 | 수산과학대학 |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
| 35 | 국립부경대학교 | 수산과학대학 | 해양수산경영경제학부  | 해양수산경영경제학부   |
| 36 | 국립부경대학교 | 수산과학대학 |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 해양생산학전공      |
| 37 | 국립부경대학교 | 수산과학대학 |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 해양경찰학전공      |
| 38 | 국립부경대학교 | 수산과학대학 | 수산생명과학부     | 자원생물학전공      |
| 39 | 국립부경대학교 | 수산과학대학 | -           | 수해양산업교육과     |
| 40 | 국립부경대학교 | 수산과학대학 | 해양수산경영경제학부  | 해양수산경영학전공    |
| 41 | 국립부경대학교 | 수산과학대학 | 수산생명과학부     | 수산생명과학부      |
| 42 | 국립부경대학교 | 수산과학대학 | 수산생명과학부     | 양식응용생명과학전공   |
| 43 | 국립부경대학교 | 수산과학대학 | 자유전공학부      | 수산과학대학자유전공학부 |
| 44 | 전남대학교   | 수산해양대학 | -           | 스마트수산자원관리학과  |
| 45 | 전남대학교   | 수산해양대학 | -           | 기관시스템공학과     |
| 46 | 전남대학교   | 수산해양대학 | -           | 수산생명의학과      |
| 47 | 전남대학교   | 수산해양대학 | -           | 해양바이오식품학과    |
| 48 | 전남대학교   | 수산해양대학 | -           | 해양경찰학과       |
| 49 | 전남대학교   | 수산해양대학 | -           | 해양융합공학과      |
| 50 | 전남대학교   | 수산해양대학 | -           | 조선해양공학과      |
| 51 | 전남대학교   | 수산해양대학 | -           | 해양생산관리학과     |
| 52 | 전남대학교   | 수산해양대학 | -           | 양식생물학과       |
| 53 | 전남대학교   | 수산해양대학 | 해양수산광역      | 해양수산광역       |
| 54 | 제주대학교   | 해양과학대학 | -           | 환경공학과        |
| 55 | 제주대학교   | 해양과학대학 | -           | 지구해양공학과      |
| 56 | 제주대학교   | 해양과학대학 | 해양의생명과학부    | 수산생명의학과      |
| 57 | 제주대학교   | 해양과학대학 | -           | 해양산업경찰학과     |
| 58 | 제주대학교   | 해양과학대학 | -           | 해양시스템공학과     |
| 59 | 제주대학교   | 해양과학대학 | 해양의생명과학부    | 해양생명과학과      |
| 60 | 제주대학교   | 해양과학대학 | 해양의생명과학부    | 수산생명의학전공     |
| 61 | 제주대학교   | 해양과학대학 | 해양의생명과학부    | 해양생명과학전공     |

## 붙임 2 취창업 계획서 (학생용)

- \* 재단 장학시스템에서 청년창업어업인장학금 신청 시 온라인상에서 직접 작성(계획서 별도 업로드하지 않음)
- \* 취창업 계획서 작성 시, 내용에 본인 출신 지역이나 학교 등 소속을 알 수 있는 단어, 문구, 이름 등을 기재한 경우 심사 시 감점
- \* 진출계획과 진출준비를 동일하게 작성한 경우 탈락사유가 될 수 있음

### ◎ 졸업 후 진출분야(어업 또는 어업분야 산업체 취업·창업 중 해당란 ○표 선택)

| 어업 취창업 |    | 어업분야 산업체 취창업 |    |
|--------|----|--------------|----|
| 창업     | 취업 | 창업           | 취업 |
| ○      | ○  | ○            | ○  |

\* 어업 취·창업의 범위 : 어업인, 어업법인

\* 산업체 취창업 범위 : 어촌지역 외 산업체, 정부기관, 공공기관, 수협중앙회는 인정하지 않음

### ◎ 어업 또는 수산산업 분야 취·창업 진출계획

|                                         |                                                                                                                |
|-----------------------------------------|----------------------------------------------------------------------------------------------------------------|
| 2-1. 진출계획<br>(동기 및 목표)<br>(500~700자 내외) | 어업 또는 수산분야 산업 진출동기·목표 및 진출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br>(졸업 후 수산분야에 대한 취업/창업 시기·단계별 목표 및 실행<br>계획, 실행방법 등 어업기반여부 등 포함*하여 표기) |
|-----------------------------------------|----------------------------------------------------------------------------------------------------------------|

#### \* 취창업계획서 유의사항

- 1) 인적사항(성명, 출신지역, 가족관계, 생년(나이), 연령, 성별, 출신학교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하여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작성 불가
- 2) 부득이 기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없도록 블라인드 처리하여 기재  
(OO대학교에서 관련 전공을 통하여 / OO대학 연구소에서)

|                                |                                                                                                                                                                                 |
|--------------------------------|---------------------------------------------------------------------------------------------------------------------------------------------------------------------------------|
| 2-2. 진출준비(과정)<br>(500~700자 내외)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진출 목표 달성을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관련 교육 및 경험 등)과</li> <li>②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진출 목표 달성을 위한 졸업학기까지의 준비계획<br/>(교육·훈련, 역량강화 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li> </ol> |
|--------------------------------|---------------------------------------------------------------------------------------------------------------------------------------------------------------------------------|

#### \* 취창업계획서 유의사항

- 1) 인적사항(성명, 출신지역, 가족관계, 생년(나이), 연령, 성별, 출신학교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하여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작성 불가
- 2) 부득이 기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없도록 블라인드 처리하여 기재  
(OO대학교에서 관련 전공을 통하여 / OO대학 연구소에서)

### ※ 기타 (부모 또는 본인의 어업기반 여부 해당란 ○표 선택)

| 어업기반 있음 | 해당없음 |
|---------|------|
| ○       | ○    |



## 붙임 2-1 취창업 계획서 (심사위원용)

\* 동일 수준의 취창업계획서일 경우 어업기반이 있는 자, 전공학과와 연계한 창업계획자 선발 우대

### ◎ 학과정보

(예시) 해양생명과학과

### ◎ 졸업 후 진출 분야

| 어업 취창업 |    | 어업 법인체 취창업 |    |
|--------|----|------------|----|
| 창업     | 취업 | 창업         | 취업 |
|        |    |            |    |

### ◎ 기타

| 어업기반 있음 | 해당없음 |
|---------|------|
|         |      |

### ◎ 어업 또는 수산산업 분야 취창업 진출계획

|                                         |                                                                                                                |
|-----------------------------------------|----------------------------------------------------------------------------------------------------------------|
| 2-1. 진출계획<br>(동기 및 목표)<br>(500~700자 내외) | 어업 또는 수산분야 산업 진출동기·목표 및 진출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br>(졸업 후 수산분야에 대한 취업/창업 시기·단계별 목표 및 실행<br>계획, 실행방법 등 어업기반여부 등 포함*하여 표기) |
|-----------------------------------------|----------------------------------------------------------------------------------------------------------------|

|                                |                                                                                                                        |
|--------------------------------|------------------------------------------------------------------------------------------------------------------------|
| 2-2. 진출준비(과정)<br>(500~700자 내외) | ① 진출 목표 달성을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관련 교육 및 경험 등)과<br>②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진출 목표 달성을 위한 졸업학기까지의 준비계획<br>(교육·훈련, 역량강화 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
|--------------------------------|------------------------------------------------------------------------------------------------------------------------|

|               |                                                                                      |                      |
|---------------|--------------------------------------------------------------------------------------|----------------------|
| 진출계획          | 지속적인 활동 가능성(20)                                                                      | 20 / 16 / 12 / 8 / 4 |
|               | 분야 선택의 적절성(5)                                                                        | 5 / 4 / 3 / 2 / 1    |
|               | 계획의 구체성(10)                                                                          | 10 / 8 / 6 / 4 / 2   |
|               | 계획의 실현 가능성(20)                                                                       | 20 / 16 / 12 / 8 / 4 |
| 진출 준비과정       | 진출을 위한 사전준비(15)                                                                      | 15 / 12 / 9 / 6 / 3  |
| 총점 70점        | ※ 감점(-5점) : 계획서 내용에 본인의 소속을 알 수 있는 단어, 문구,<br>이름 등을 의도적으로 기재한 경우, 자신의 계획서를 중복 기재한 경우 |                      |
| 평가내용(최대 100자) |                                                                                      |                      |

### 붙임 3 장학생 선발 세부지표(안)

#### 1. 신규자 선발

##### □ 서류심사 지표

| 평가지표                |         | 평가항목                       | 배점  |
|---------------------|---------|----------------------------|-----|
| 취창업<br>계획서<br>(70점) | 진출계획    | 지속적인 활동 가능성                | 20  |
|                     |         | 분야 선택의 적절성,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35  |
|                     | 진출 준비과정 | 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               | 15  |
| 성적<br>(30점)         |         | 94점 이상                     | 30  |
|                     |         | 88점 이상 ~ 94점 미만            | 28  |
|                     |         | 82점 이상 ~ 88점 미만            | 26  |
|                     |         | 76점 이상 ~ 82점 미만            | 24  |
|                     |         | 70점 이상 ~ 76점 미만            | 22  |
| 합계                  |         |                            | 100 |

※ 동점자 발생 시 취창업계획서(지속적인 활동 가능성, 계획의 실현 가능성, 계획의 구체성, 분야 선택의 적절성순), 성적 고득점순으로 선발

##### ○ 취창업계획서 세부 심사지표

| 평가지표           |                   | 평가항목                                         | 배점 |
|----------------|-------------------|----------------------------------------------|----|
| 진출<br>계획       | 지속적인<br>활동<br>가능성 | S. 어업 및 수산 산업 분야에 진출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20 |
|                |                   | A. 어업 및 수산 산업 분야에 진출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    | 16 |
|                |                   | B. 어업 및 수산 산업 분야에 진출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보통이다.  | 12 |
|                |                   | C. 어업 및 수산 산업 분야에 진출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낮다.    | 8  |
|                |                   | D. 어업 및 수산 산업 분야에 진출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 4  |
|                | 분야<br>선택의<br>적절성  | S. 본인 여건에 맞는 분야의 선택 탁월                       | 5  |
|                |                   | A. 본인 여건에 맞는 분야의 선택 우수                       | 4  |
|                |                   | B. 본인 여건에 맞는 분야의 선택 보통                       | 3  |
|                |                   | C. 본인 여건에 맞는 분야의 선택 다소 미흡                    | 2  |
|                |                   | D. 본인 여건에 맞는 분야의 선택 미흡                       | 1  |
|                | 계획의<br>구체성        | S. 어업 및 수산 산업 분야 진출 계획의 구체성이 매우 높다.          | 10 |
|                |                   | A. 어업 및 수산 산업 분야 진출 계획의 구체성이 높다.             | 8  |
|                |                   | B. 어업 및 수산 산업 분야 진출 계획의 구체성이 보통이다.           | 6  |
|                |                   | C. 어업 및 수산 산업 분야 진출 계획의 구체성이 낮다.             | 4  |
|                |                   | D. 어업 및 수산 산업 분야 진출 계획의 구체성이 매우 낮다.          | 2  |
|                | 계획의 실현<br>가능성     | S.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다.            | 20 |
|                |                   | A.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높다.               | 16 |
|                |                   | B.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보통이다.             | 12 |
|                |                   | C.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낮다.               | 8  |
|                |                   | D.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            | 4  |
| 진출<br>준비<br>과정 | 진출을<br>위한<br>사전준비 | S. 어업 및 수산 산업 분야 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 수준이 매우 높다.     | 15 |
|                |                   | A. 어업 및 수산 산업 분야 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 수준이 높다.        | 12 |
|                |                   | B. 어업 및 수산 산업 분야 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 수준이 보통이다.      | 9  |
|                |                   | C. 어업 및 수산 산업 분야 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 수준이 낮다.        | 6  |
|                |                   | D. 어업 및 수산 산업 분야 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 수준이 매우 낮다.     | 3  |
| 합계             |                   |                                              | 70 |

※ 감점(-5점) : 계획서 내용에 본인의 소속을 알 수 있는 단어, 문구, 이름 등을 의도적으로 기재한 경우, 자신의 계획서를 중복 기재한 경우

※ 탈락가능 : 진출계획과 진출준비를 동일하게 작성한 경우 탈락사유가 될 수 있음

## 2. 계속자 선발

### □ 계속자 심사지표

| 평가지표        | 평가항목                                | 계속자격 |
|-------------|-------------------------------------|------|
| 계속장학생<br>자격 | 장학생 지원기준(학점, 성적 등) 충족 및 의무교육 이수     | 유지   |
|             | 장학생 지원기준(학점, 성적 등) 미 충족 및 의무교육 미 이수 | 상실   |

### 〈 세부심사기준 〉

|                                                     |                                                                          |    |
|-----------------------------------------------------|--------------------------------------------------------------------------|----|
| 세부기준 - 진출계획(55)                                     |                                                                          |    |
| 1-1. 지속적인 활동 가능성(20)                                |                                                                          |    |
| (중점 체크사항) 본 사업을 기반으로 어업 및 수산 산업 분야에 지속적으로 활동할 인력인가? |                                                                          |    |
|                                                     | S. 어업 및 수산 산업 분야에 진출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20 |
|                                                     | A. 어업 및 수산 산업 분야에 진출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                                | 16 |
|                                                     | B. 어업 및 수산 산업 분야에 진출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보통이다.                              | 12 |
|                                                     | C. 어업 및 수산 산업 분야에 진출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낮다.                                | 8  |
|                                                     | D. 어업 및 수산 산업 분야에 진출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 4  |
| ◆ 취창업계획서 관련 항목                                      |                                                                          |    |
| - 어업기반 확보 여부                                        |                                                                          |    |
| - 진출계획(목표) / 진출준비과정                                 |                                                                          |    |
| 평가<br>착안<br>사항                                      | ◆ 진출동기와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에 일관성이 있는가?                                           |    |
|                                                     | ◆ 신청자가 보유한 체험, 경험, 실적, 전공분야 등이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와 연관성이 높은가?                    |    |
|                                                     | ◆ 장단기(단계별) 진출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    |
|                                                     | ◆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가? (또는 기반 구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    |
|                                                     | ◆ 진출 목표(또는 이미 진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역량 개발 노력 및 계획은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가?              |    |
|                                                     | ◆ (예시) 전공학과와 연계된 창업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
| 세부기준 - 진출계획(55)                                     |                                                                          |    |
| 1-2. 분야선택의 적절성(5)                                   |                                                                          |    |
| (중점 체크사항) 본인 여건에 맞는 분야를 선택하였는가?                     |                                                                          |    |
|                                                     | S. 본인 여건에 맞는 분야의 선택 탁월                                                   | 5  |
|                                                     | A. 본인 여건에 맞는 분야의 선택 우수                                                   | 4  |
|                                                     | B. 본인 여건에 맞는 분야의 선택 보통                                                   | 3  |
|                                                     | C. 본인 여건에 맞는 분야의 선택 다소 미흡                                                | 2  |
|                                                     | D. 본인 여건에 맞는 분야의 선택 미흡                                                   | 1  |
| ◆ 취창업계획서 관련 항목                                      |                                                                          |    |
| - 어업기반 확보 여부                                        |                                                                          |    |
| - 진출계획(목표)                                          |                                                                          |    |
| 평가<br>착안<br>사항                                      | ◆ 신청자가 보유한 체험, 경험, 실적, 전공분야 등이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와 연관성이 높은가?                    |    |
|                                                     | ◆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가?(또는 구축하고자 하는 기반이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
|                                                     | ◆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한 논리적 근거나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는가?                                |    |
|                                                     | ◆ (예시) 전공학과와 연계된 창업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

|                                     |                                                              |
|-------------------------------------|--------------------------------------------------------------|
| 세부기준 - 진출계획(55)                     |                                                              |
| 1-3. 계획의 구체성(10)                    |                                                              |
| (중점 체크사항) 취창업계획서는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가?   |                                                              |
| S. 어업 및 수산 산업 분야 진출 계획의 구체성이 매우 높다. | 10                                                           |
| A. 어업 및 수산 산업 분야 진출 계획의 구체성이 높다.    | 8                                                            |
| B. 어업 및 수산 산업 분야 진출 계획의 구체성이 보통이다.  | 6                                                            |
| C. 어업 및 수산 산업 분야 진출 계획의 구체성이 낮다.    | 4                                                            |
| D. 어업 및 수산 산업 분야 진출 계획의 구체성이 매우 낮다. | 2                                                            |
| ◆ 취창업계획서 관련 항목                      |                                                              |
| - 진출계획(목표) / 진출준비과정                 |                                                              |
| 평가                                  | ◆ 장단기(단계별) 진출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
| 착안                                  | ◆ 진출 목표 달성을 위한 청창어 장학생 선정 이후의 역량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
| 사항                                  | ◆ (예시) 전공학과와 연계된 창어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                                   |                                                                   |
|-----------------------------------|-------------------------------------------------------------------|
| 세부기준 - 진출계획(55)                   |                                                                   |
| 1-4. 계획의 실현가능성(20)                |                                                                   |
| (중점 체크사항) 실현 가능성 있는 계획을 작성하였는가?   |                                                                   |
| S.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다. | 20                                                                |
| A.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높다.    | 16                                                                |
| B.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보통이다.  | 12                                                                |
| C.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낮다.    | 8                                                                 |
| D.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 | 4                                                                 |
| ◆ 취창업계획서 관련 항목                    |                                                                   |
| - 어업기반 확보 여부                      |                                                                   |
| - 진출계획(목표) / 진출준비과정               |                                                                   |
| 평가                                | ◆ 진출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실현 가능한 내용인가?                  |
| 착안                                | ◆ 진출 목표 달성을 위한 청창어 장학생 선정 이후의 역량 개발계획이 실현 가능한 계획인가?               |
| 사항                                | ◆ (예시)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가?(또는 구축하고자 하는 기반이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                                   | ◆ (예시) 전공학과와 연계된 창어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                                                     |                                                                    |
|-----------------------------------------------------|--------------------------------------------------------------------|
| 세부기준 - 진출준비과정(15)                                   |                                                                    |
| 2-1. 진출을 위한 사전준비(15)                                |                                                                    |
| (중점 체크사항) 어업 및 수산 산업 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가? |                                                                    |
| S. 어업 및 수산 산업 분야 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 수준이 매우 높다.            | 15                                                                 |
| A. 어업 및 수산 산업 분야 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 수준이 높다.               | 12                                                                 |
| B. 어업 및 수산 산업 분야 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 수준이 보통이다.             | 9                                                                  |
| C. 어업 및 수산 산업 분야 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 수준이 낮다.               | 6                                                                  |
| D. 어업 및 수산 산업 분야 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 수준이 매우 낮다.            | 3                                                                  |
| ◆ 취창업계획서 관련 항목                                      |                                                                    |
| - 진출준비과정                                            |                                                                    |
| 평가                                                  | ◆ 다양한 활동(체험, 경험, 어업활동)을 하였는가?                                      |
| 착안                                                  | ◆ 해당 준비활동이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와의 연관성이 높은가?                                 |
| 사항                                                  | ◆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와 연관성이 높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관련되는 다양한 교육을 수료하였는가?         |
|                                                     | ◆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에 성공적인 진출을 위한 인적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가?             |
|                                                     | ◆ 진출목표 달성을 위한 청창어 장학생 선정 이후의 역량 개발 계획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
|                                                     | ◆ (예시)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가?(또는 구축하고자 하는 기반이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                                                     | ◆ (예시) 전공학과와 연계된 창어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 붙임 4 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설치)** 청년창업어업인장학금 사업의 세부운영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청년창업어업인 장학사업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장학생 선발·심사 기준에 관한 사항
2. 의무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3. 의무종사 범위 및 유예 여부에 관한 사항
4. 반환·환수 대상자 지정, 이의신청 및 환수 유예 기간 등에 관한 사항
5. 장학생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창업어업인 장학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한국농어촌희망재단 사무총장
2. 해양수산부 담당자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농어촌희망재단 사무총장이 되고, 위원은 장학사업, 어업 및 수산 관련 전문가, 현장실습, 수산분야 취창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청년창업어업인 장학사업 세부운영을 위한 사안발생 시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서면회의)** 위원회는 대면심의·의결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당사자·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청년창업어업인 장학사업 담당 본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부의 안건 설명,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 회의의 중지, 산회 일시
2. 회의 장소
3. 출석 및 결석위원과 참여자의 서명
4. 회의 결과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완료된 회의록은 담당 부서에서 통합하여 관리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재단 임직원이나 공무원인 자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붙임 5 장학금 포기 확인서

※ 정산반납한 경우 미제출 대상에 해당됨

### 청년창업어업인장학금(의무종사) 포기 확인서

|            |                                                                                                                                                                                                     |           |    |         |               |     |
|------------|-----------------------------------------------------------------------------------------------------------------------------------------------------------------------------------------------------|-----------|----|---------|---------------|-----|
| 장학<br>정보   | 대학명                                                                                                                                                                                                 | 농어촌희망대학   |    | 최초 선발학기 | 2020년 2학기     |     |
|            | 총 수혜금액                                                                                                                                                                                              | 9,000,000 |    | 총 수혜횟수  | 2회            |     |
| 학생<br>정보   | 성명                                                                                                                                                                                                  | 홍길동       | 학과 | 원예학과    | 학년            | 4학년 |
|            | 학번                                                                                                                                                                                                  | 20010506  |    | 연락처     | 010-****-**** |     |
| 의무<br>이행방법 | <input type="checkbox"/> 장학금 반환 / <input type="checkbox"/> 의무종사 이행 / <input type="checkbox"/> 반환 + 의무종사 병행<br>※ 희망하는 의무이행방법에 V 표시                                                                   |           |    |         |               |     |
| 포기<br>사유   | 본인은 20    학년    학기 청년창업어업인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br>[포기사유: _____](으)로 인하여 장학금을 포기하며, 해당학기<br>수혜 받은 등록금과 학업장려금 전액 [반납금액: _____원]을 반환하겠습니다.<br><br>※ 포기사유 (예시): 수산분야 취업의사 변경 등<br>※ 반납금액 (예시): 4,500,000원(원단위) |           |    |         |               |     |

20    년    월    일

성명                      (인)

한국농어촌희망재단 이사장 귀하

**제6장 제6조 지급(신용)보험 가입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 지급(신용)보험 가입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청년창업어업인장학금 선발 및 운영 지침」에 따라 장학생 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환수를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험 미가입시 장학금 포기로 간주되어,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 본인은 신청인(학생)이 '지급(신용)보험 보험가입 안내문'을 수령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에 대하여 신청인(학생)에게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만약 자격요건 미충족 및 허위 작성 등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 자격 박탈 및 지원금의 반환 및 환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 ○ 친권자(후견인)인적사항 및 학생 인적사항

| 법정대리인   |               |        |            |                |       |
|---------|---------------|--------|------------|----------------|-------|
| 성명      | 홍길동           | 생년월일   | 1980.01.01 | 신청자와의 관계       | 홍길순의부 |
| 연락처     | 010-1111-1111 |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중앙로586 |       |
| 학생(신청인) |               |        |            |                |       |
| 성명      | 홍길순           | 주민등록번호 |            | 060101-1111111 |       |
| 연락처     | 010-2222-2222 | 주소     |            | 서울시 서초구 중앙로586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 항목                | 수집 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등록금 지급, 학업장려금 지급, 사후관리 | 10년     |

※ 위의 (필수)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학생의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수혜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모든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시 V 표시)

20 년의 이력

법정대리인(치권자 또는 후견인)성명 :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한국농어촌희망재단 귀중

## 참고 1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학생 장학시스템’ 회원가입(로그인) 후 동의 진행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이하 ‘재단’)이 금융거래 관련 계약, 장학금 지급, 장학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연수사업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조회하며, 재단이 장학금 등 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정보(기존 재단 수혜정보 포함)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법정대리인, 소속 또는 소속 예정인 고등교육기관에 제공 및 활용(가구원 상담 포함)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금융거래라 함은 여신업무, 부수업무(사후관리 업무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금융거래관계(장학금)의 설정 여부 판단
- 금융거래관계(장학금)의 설정·유지·이행·관리에 필요한 정보 수집
- 본인의 장학금 지원심사 및 신용 판단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가족관계(부, 모 또는 배우자) 확인, 장학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대상자, 의무종사 이행점검, 기타 지원사업 대상자 선발·관리 사후관리 등
- 중복 지원의 방지 등
- 장학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재단 정관 제8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분석·연구
- 청년창업어업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청년창업어업 인재육성 지원 조사·분석·연구
-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금융사고 조사
-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 장학금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보유 파악, 보전조치, 강제집행, 기타 사후관리 업무 등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 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관리
- 청년창업어업인 장학금 시행, 장학금 환수 등
- 법령상 의무이행 등
-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선택적 동의사항] 어업 및 수산분야 취·창업을 위한 채용정보 및 박람회 정보제공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대학명, 학과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연락처, 주소,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사항은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로 인한 관련 서비스는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
| 수집·이용<br>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명, 생년월일, 성별, 대학명, 학과명, 학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비상연락처 등 연락처,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성적, 이수학점, 학자금 지원구간(舊 소득분위) 통지서</li> </ul> </li> <li>■ 채무보증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li> </ul> </li> <li>■ 금융거래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li> </ul> </li> <li>■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li> <li>▶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li> <li>▶ 공공정보 :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공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등</li> </ul> </li> <li>■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li> <li>■ 학자금지원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자금대출(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li> </ul> </li> <li>■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및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자금 지원구간(舊 소득분위)·소득인정액 산정 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 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정보(성명, 주소,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 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 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청년창업어업인 장학금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li> </ul> </li> </ul> <p>※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 됩니다.</p> |
| 보유·이용<br>기간                           | <p>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장학금 지원 및 의무교육, 의무종사 등 장학금 지원 및 관리업무 종료일 까지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p> <p>단, 지원 종료 후에도 중복 지원의 방지, 장학금 관리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p>                                                                                                                                                                                                                                                                                                                                                                                                                                                                                                                                                                                                                                                                                                                                                                                                                                                                                                                                                                                                                                                                                                                                                                                                                                                                                                                                                                                                                                                                                                          |
| 수집·이용<br>동의 여부                        | <p>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p>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
| 동의를 거부할<br>권리 및 동의를<br>거부할 경우의<br>불이익 | <p>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장학금지원 신청·선정·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

##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해당 대학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문문화대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 국립대법인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 국립대법인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울산과학기술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한국전통문화대학)
- 대법원
- 관계행정기관(해양수산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그 산하 기관)
-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장학재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본인이 소속 또는 소속 예정)
- 금융회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법인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구센터 포함)
- 「신용정보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평가정보(주) 등)
- 청년창업어업인 장학금 지원사업(舊 수산후계 장학금 지원사업)을 위한 기부금 기부처
- 업무위탁업체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업체 : 의무종사 및 상환 관련 안내 및 상담업체, DM 발송업체, 장학생 교육업체, 채권추심업체, 조사전문업체, 연구용역수행자,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의무교육 등 장학생 관리 업무 대행업체(선발, 행사, 운영, 관리) 등
  - 재단은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 청년창업어업인 장학생 의무교육 관련 단체 상해보험 등의 운영을 위한 보험업체
- 청년창업어업인 장학생 사후관리를 위한 보증보험사
- 외부 연계 채무자 이차지원 및 부실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 수행을 위한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 장학생 계획 및 실적평가를 위해 재단이 정하는 심사위원회 및 기관(단체)

|                                       |                                                                                                                                                                                                                                                                                                                                                                                                                                                                                                                                                                                                                                                                                                                                                                                                                                                                                                                                                                                                                                                                                                                                                                                                                                                                                                                                                                                                                                                                                                                                                                                                                                                                                                                                                                                                                                                                                                                                                                                                                                                                                                                                                                                                       |
|---------------------------------------|-------------------------------------------------------------------------------------------------------------------------------------------------------------------------------------------------------------------------------------------------------------------------------------------------------------------------------------------------------------------------------------------------------------------------------------------------------------------------------------------------------------------------------------------------------------------------------------------------------------------------------------------------------------------------------------------------------------------------------------------------------------------------------------------------------------------------------------------------------------------------------------------------------------------------------------------------------------------------------------------------------------------------------------------------------------------------------------------------------------------------------------------------------------------------------------------------------------------------------------------------------------------------------------------------------------------------------------------------------------------------------------------------------------------------------------------------------------------------------------------------------------------------------------------------------------------------------------------------------------------------------------------------------------------------------------------------------------------------------------------------------------------------------------------------------------------------------------------------------------------------------------------------------------------------------------------------------------------------------------------------------------------------------------------------------------------------------------------------------------------------------------------------------------------------------------------------------|
| 제공·조회<br>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li> <li>■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 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의 수행</li> <li>■ 중복 지원의 방지 등</li> <li>■ 장학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li> <li>■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li> <li>■ 청년창업어업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li> <li>■ 재단 정관 제4조에 따른 장학금 지원 및 국내·외 연수사업</li> <li>■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장학사업, 장학금 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의무교육 지원 사업 등,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 관련 업무의 수행</li> <li>■ 장학금(등록금, 학업장려금) 채권 관리업무 수행</li> <li>■ 의무이행 등</li> <li>■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li> </ul> </li> <li>■ 청년창업어업인 장학금 지원사업 관련 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험업무 처리</li> <li>■ 청년창업어업인 장학금 지원사업 교육위탁 및 사후관리업무 수행</li> </ul>                                                                                                                                                                                                                                                                                                                                                                                                                                                                                                                                                                                                                                                                                                                                                                                                                                                                                                                                                                                                                                                                                                                                                                                                                                                                                                                                                                                            |
| 제공·조회 및<br>요청할<br>개인<br>(신용)정보의<br>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명, 생년월일, 성별, 대학명, 학과명, 학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연락처,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등</li> <li>* 이중 가입지원 제한을 위한 [중복가입확인정보(DI)]</li> </ul> </li> <li>■ 개인대출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li> </ul> </li> <li>■ 채무보증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li> </ul> </li> <li>■ 금융거래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li> </ul> </li> <li>■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li> <li>▶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li> </ul> </li> <li>■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거래정보, 상환정보, 신용거래정보,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신용능력정보</li> </ul> </li> <li>■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li> <li>■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 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정보</li> <li>■ 학자금지원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자금대출(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li> </ul> </li> <li>■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청년창업어업인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자금 지원구간(舊 소득분위)·소득인정액 산정 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정보(성명, 주소,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 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 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청년창업어업인 장학생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li> </ul> </li> <li>■ 위탁업체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li> </ul> </li> <li>■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에 따라 제공·조회되는 정보</li> </ul> <p>※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 됩니다.</p> |

|                                       |                                                                                                                                                                     |
|---------------------------------------|---------------------------------------------------------------------------------------------------------------------------------------------------------------------|
| 제공받은 자의<br>개인(신용)<br>정보 보유·이용<br>기간   | 위 개인정보는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 시까지 위 제공·조회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졸업 이후에도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에 따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제공·조회<br>동의 여부                        |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br><b>(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b>                                                |
| 동의를 거부할<br>권리 및 동의를<br>거부할 경우의<br>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장학금지원 신청·선정·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br><b>(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b> |

**참고 2****장학생 의무사항 및 장학금 수혜 관련 취·창업 약속서****청년창업어업인장학생 의무사항 동의 및 취·창업 약속서**

**제1조 (장학생의 의무·준수 사항)** 청년창업어업인 장학금 사업을 통해 선정된 장학생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1. 최상의 학업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장학생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3. 대한민국 국적자(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수급 불가)로서 신청 자격 기준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재단이 정한 장학생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업무처리 기준 및 반환·환수규정에서 정한 장학생 자격 박탈 사유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해당 사유발생으로 장학생 자격이 박탈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장학금을 지급받아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의무종사(취업, 창업) 기간 내 재단이 인정하는 범위 내의 어업 및 수산 산업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 기간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졸업 후에도 인적사항 및 진로(취업, 진학 등) 등에 관한 사항을 재단에 보고하고 재단이 아래와 같이 확인 조사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추적 및 사후관리 활용을 위한 정보 활용]**

- 진로추적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본인의 직장 및 재직기간 등의 정보를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등으로부터 재단이 수집 및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출한 서류 또는 고용보험 정보 및 건강보험 정보로 의무종사(어업 및 수산산업 취업, 창업)를 인정받는 경우라도 사후에 고의·과실·허위·누락·위변조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의무종사 기간은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7. 장학금 신청정보 및 구비서류에 정정이 필요한 경우, 소속대학 담당교직원이 해당 정보 및 구비서류를 정정할 수 있다는 것이 동의합니다.
8. 위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이의 불이행(미준수)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제2조 (계속 장학생 지원 자격 유지)** 졸업 전 재학 기간 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12점) 이수 및 성적기준(70점 이상) 충족
2. 재학 중 각종 의무사항 이행(① 보증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보증서 발급·제출, ② 의무교육 이수 및 보고 등)

**제3조 (장학금 중복지원 방지)** 청년창업어업인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타 장학금과 중복으로 지원(본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지원 포함)받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학자금(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경우 즉시 상환 또는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4조 (보증보험)** 장학금 수혜를 위한 매 학기 보증보험 가입의 의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보증보험 조회동의, 전자서명 등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였고, 장학생 자격 상실 및 의무종사 미이행, 반환 약정의 미준수 등으로 인하여 장학금 환수가 보험사를 통해 실시되는 것과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보험내용) 보험가입금액은 해당학기 등록금과 학업장려금이며 보험 기간은 재학 중 장학금 수혜기간(최대 3년 6개월)과 보험사가 정한 보험기간을 합한 기간입니다.  
※ 매 학기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및 장학생별 기간·금액이 별도로 설정됨
- (가입방법) 보험사 홈페이지(모바일앱)에서 ① 조회동의 ② 전자서명 및 결제
- (의무 불이행) 장학생 자격 상실, 의무종사 미이행 등을 통해 장학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학생은 반환

약정을 체결하고, 장학생이 반환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반환 약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재단은 장학생을 환수대상자로 지정 후 보증보험사에 환수대상 장학금을 청구하고, 보증보험사는 청구된 금액을 재단에게 변제합니다.

- (보증보험사 장학금환수) 보증보험사가 환수대상 장학금을 장학생 대신 재단으로 변제하게 되면 보증보험사는 장학생에게 등록금과 학업장려금, 지연손해금 및 법적조치비용을 포함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며 이에 따라 장학생의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본인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에 동의한 바에 따라 동 장학금 사후 관리업무를 위해 보증보험사에 개인식별 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에 동의합니다.

**제5조 (장학생 의무교육)** 재학 중 장학생 취업 또는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학기별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이를 보고해야 함을 인지하고 매 학기 재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이수결과를 보고할 것을 확약합니다. **기한 내 교육 이수**가 완료되지 않을 시, 차기학기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고, 장학생 자격이 상실됨에 동의합니다.

**제6조 (의무종사 이행)** 장학생 선발 이후 해양수산부 또는 재단이 인정하는 어업 및 수산업 분야 산업체 중 지역(어촌), 규모 등의 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의무종사 및 창업(어업종사 포함)을 이행하겠습니다.

**제7조 (의무종사 기간)** 장학생 선발 이후 아래에 따라 산정된 의무종사기간 동안 제6조에 따른 어업 및 수산업 분야 사업장 등 근무 또는 창업기간 유지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① 장학생의 의무종사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의무종사 기간 : 수혜학기 × 6개월

**제8조 (의무종사 보고 시 제출 서류)** 재단이 의무종사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것이며, 단, 고용보험 정보 및 건강보험 정보로 의무종사(어업 및 수산업 취업, 창업)를 인정받은 경우라도 사후에 고의·과실·허위·누락·위변조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의무종사 기간은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9조 (장학금 반환 동의)**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재단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을 재단 또는 대학으로 즉시 반환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학자금 수혜 후에도 학자금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관련 정보의 누락 또는 관련 서류를 위변조 시 학자금지원 제한에 동의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①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고등교육기관, 은행, 재단 등에 제출한 경우 1년 내지 3년간의 학자금지원 제한됨)
- ② 학생이 장학생 자격을 포기하는 경우, 장학금 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 ③ 전과, 성적기준 및 학점 이수기준 미충족, 보증보험에 미가입 등 장학생 지원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자격은 박탈되고 전액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 ④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이 지급된 후 미등록 휴학할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반환
- ⑤ 제적·자퇴·편입·휴학\* 등 학적변동 발생자는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 \* 단,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 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하며,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 상실됨
  - \* 휴학한 학기에 지급받은 학업장려금은 휴학 기간과 관계없이 반환하여야 함
- ⑥ 3년 이상 휴학, 자퇴, 편입, 졸업유예, 직계존속의 간병, 소속대학 규정상 불가피한 경우, 전액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제10조 (반환 대상자)** 제9조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반환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지원받은 수혜금액 전액(등록금, 학업장려금)을 청년창업어업인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반환하겠습니다.

1. 제9조에 의한 장학금 반환 대상자인 경우
2. 자퇴, 제적 등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이 상실된 경우

3. 의무종사를 불이행한 경우
4. 국적을 변경하는 경우
5. 재단 또는 대학에 보고하는 각종 사항들에 허위(虛僞)가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재단이 장학금 지급, 의무종사 이행에 대한 제반 업무 수행 중 반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반환의 의무)** 제10조의 사유로 인해 재단에서 장학금 반환 통보를 받고 반환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를 반환 기한 내 성실히 반납하겠습니다. 만일,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수절차 미이행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서약합니다.

**제12조 (반환 시점)** 제11조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시점은 재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날 임을 인지합니다.

**제13조 (반환·환수 금액)** ① 반환·환수금액은 수급자가 수혜 받은 등록금과 학업장려금을 범위로 하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됨을 인지합니다.

$$\blacksquare \text{ 반환·환수금액} = (\text{총 수혜 장학금}^*) \times (\text{잔여의무기간} / \text{총 의무종사일})$$

$$* \text{ 장학금} = \text{등록금} + \text{학업장려금}$$

- ② 반환 약정에 의하여 결정된 환수금액 중 원 단위 이하의 금액은 최종 상환일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합산됨을 인지합니다.

**제14조 (장학금 미환수 시 처리방법)** 장학생이 제11조에 따른 반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단은 장학생이 가입한 보증보험 이행청구 또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장학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제15조 (정당한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신청을 하겠습니다.

1. 사망한 경우
2. 파산 또는 면책, 개인 회생이 결정된 경우
3. 질병 및 상해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장애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상 1~3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5. 천재지변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의해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재단이 수급자의 (전문) 학사과정 수학 및 의무종사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6. 그 밖에 의무종사기간 및 환수금액의 감면 또는 면제가 필요하다고 재단이 승인하는 경우

**제16조 (공정증서 동의)** 본인은 이 약정서를 공정증서로 이용 및 활용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제17조 (개인정보제공 동의)** 장학생으로 선정된 이후부터 졸업 후까지 목적달성이 완료되기 전까지 장학금 신청·심사·의무교육 등과 진로 추석 및 현황통계 조사 등을 위해 정부기관 및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등 본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 동의합니다.

**제18조 (반환·환수 규정 준수)** 본인은 훈령, 재단 내규 및 기타 법 규정과 약정서 상의 동의·확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참고 3

## 관련법령(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등)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시행 2023. 4. 19.] [법률 제19012호, 2022. 10. 18., 타법개정]

| 분류    | 해당법령                                                                                                                                                                                                                                                                                                                                                                                                                                                                                                               |
|-------|--------------------------------------------------------------------------------------------------------------------------------------------------------------------------------------------------------------------------------------------------------------------------------------------------------------------------------------------------------------------------------------------------------------------------------------------------------------------------------------------------------------------|
| 수산업   |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lt;개정 2019. 8. 27.&gt;</p> <p>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p> <p>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p> <p>나. 어획물운반업: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산업</p> <p>다. 수산물가공업: 수산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품, 사료나 비료, 호료(糊料)·유지(油脂) 등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원료·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p> <p>라. 수산물유통업: 수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p> <p>마. 양식업: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산업</p> |
| 어업인   | <p>제3조(정의)</p> <p>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 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
| 어업경영체 | <p>제3조(정의)</p> <p>4.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p>                                                                                                                                                                                                                                                                                                                                                                                                               |
| 어촌    | <p>제3조(정의)</p> <p>6.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p> <p>가. 읍·면의 전 지역</p> <p>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p>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89호, 2022. 1. 4, 일부개정]

| 분류   | 해당법령                                                                                                                                                                                                                                                                                                                                                                                                                                                                                                                                                                                                                                                                                                                                                                         |
|------|------------------------------------------------------------------------------------------------------------------------------------------------------------------------------------------------------------------------------------------------------------------------------------------------------------------------------------------------------------------------------------------------------------------------------------------------------------------------------------------------------------------------------------------------------------------------------------------------------------------------------------------------------------------------------------------------------------------------------------------------------------------------------|
|      |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lt;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2020. 12. 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생략</li> <li>3. 생략</li> <li>4. 생략</li> <li>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읍·면의 지역</li> <li>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li> </ol> </li> </ol>                                                                                                                                                                                                                                                                                                                                                              |
| 농촌지역 | <p style="text-align: center;"><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u></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 2015. 12. 23.]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 2015. 12. 23., 전부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li> <li>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li> <li>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li> </ol> |

## 참고 4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및 국세청 업종코드

※ 블루푸드테크 관련 모든 전·후방산업체에 대해 어업 및 수산업 관련 업종인지 확인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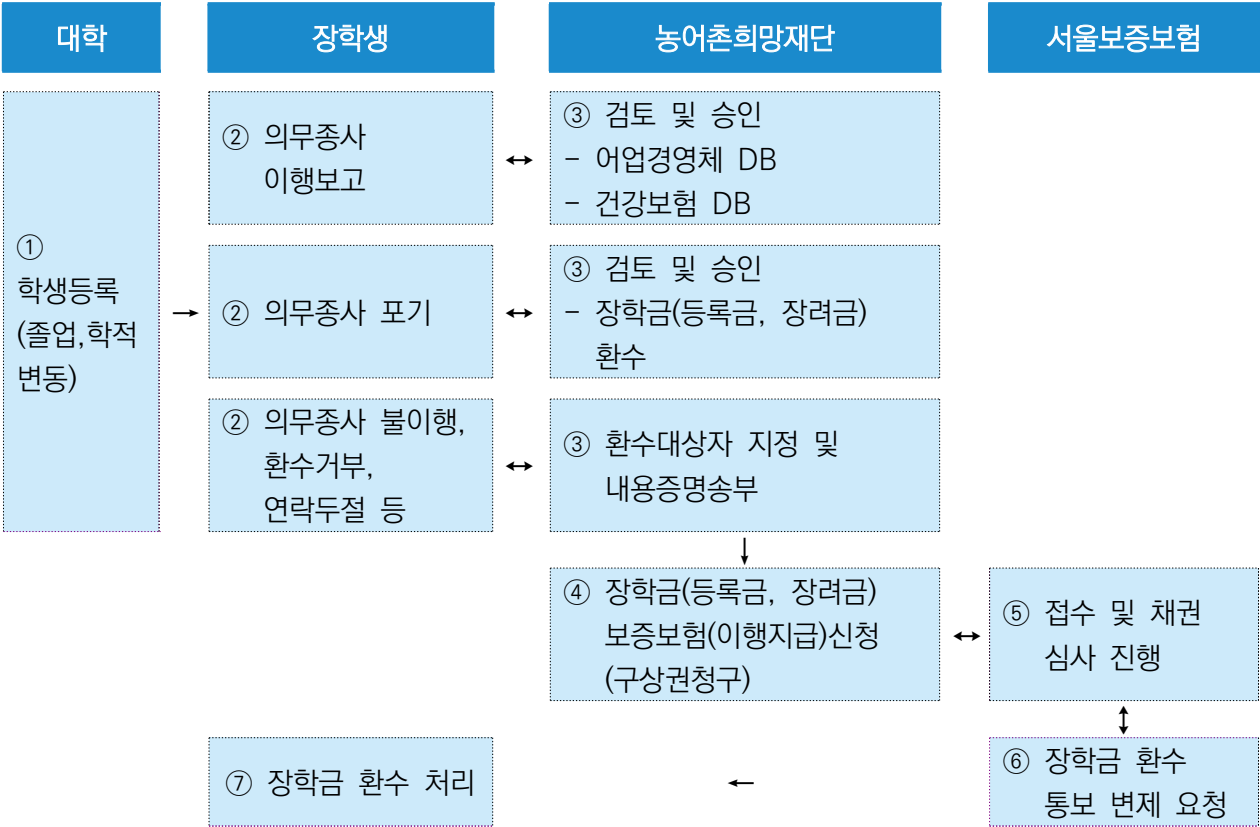
- ① 아래 코드가 어업, 제조업에 해당할 경우 인정
- ② 아래 코드가 없을 경우, 법인(개인) 인감 및 사업자등록 확인 후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어업 또는 수산업의 정의에 부합되는지 확인하여 판단함

| 대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법인사업자) |                           | 국세청 업종코드 (개인사업자) |                           | 비고 |
|---------------|-----------------------|---------------------------|------------------|---------------------------|----|
|               | 분류 코드                 | 세세분류                      | 업종 코드            | 세세분류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03112                 | 연근해 어업                    | 051102           | 연근해 어업                    |    |
|               | 03111                 | 원양 어업                     | 051104           | 원양 어업                     |    |
|               | 03120                 | 내수면 어업                    | 051200           | 내수면 어업                    |    |
|               | 03211                 | 해수면 양식 어업                 | 052101           | 해수면 양식 어업                 |    |
|               | 03212                 | 내수면 양식 어업                 | 052103           | 내수면 양식 어업                 |    |
|               | 03213                 | 수산물 부화 및 수산 종자 생산업        | 052104           | 수산물 부화 및 수산 종자 생산업        |    |
|               | 03220                 | 어업 관련 서비스업                | 052200           | 어업 관련 서비스업                |    |
| 제조업<br>(수산분야) | 10212                 |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 151200           |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    |
|               | 10211                 |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 151201           |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    |
|               | 10213                 |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 151202           |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    |
|               | 10219                 |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51203           |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
|               | 10213                 |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 154804           |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    |
|               | 10212                 |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 154805           |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    |
|               | 10220                 |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54805           |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
|               | 10220                 |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54904           |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

참고 5

의무종사 절차 개요

□ 의무종사 절차 개요



## 참고 6

## 의무종사 인정요건 및 시작·변동 심사기준

## □ 의무종사 인정요건(요약)

| 구분                               |    | 취업                               | 창업                                   |
|----------------------------------|----|----------------------------------|--------------------------------------|
| 어업인                              | 지역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 자격 | 어업경영체등록 상 경영주 외 어업인<br>(가족이 경영주) | 어업경영체등록 상 경영주<br>(재학중 상속, 승계어업인 불인정) |
|                                  | 겸업 | 어업 및 수산 산업분야 겸업 인정               | 어업 및 수산 산업분야 겸업 인정                   |
| 어업법인                             | 지역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 업종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 겸업 | 불가                               | 불가                                   |
| 어업 및 수산업<br>분야 산업체<br>(개인 또는 법인) | 지역 | 어촌지역                             | 어촌지역                                 |
|                                  | 업종 | 어업 및 수산 산업분야                     | 어업 및 수산 산업분야                         |
|                                  | 형태 | 대·중견·중·소기업 모두 가능                 | 대·중견·중·소기업 모두 가능                     |
|                                  | 규모 | 해당없음                             | 연매출액120만원(반기60만원)이상                  |
|                                  | 겸업 | 불가                               | 불가                                   |

\* 어업인 취창업 외의 분야에서 가족기업(부모가 대표)은 불인정

\* 어업인 외의 취·창업 분야에서 겸업 불인정

## □ 의무종사 시작·변동 심사기준(요약)

| 구분                 | 제출서류        | 심사기준                                                                         |
|--------------------|-------------|------------------------------------------------------------------------------|
| 어업인                |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가족이 경영주인 어업경영체에 경영주 외 어업인으로 등록                                               |
|                    | 가족관계증명서     | 경영주가 가족임을 확인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어업 및 수산업 분야 취업 인정 범위 외의 겸업 미인정                                               |
| 어업법인               | 사업자등록증      | 어업법인회사, 가족기업 여부 확인                                                           |
|                    | 법인등기부등본     | 어업법인회사, 가족기업 여부 확인                                                           |
|                    |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법인 어업경영체등록 확인                                                                |
|                    | 4대보험가입내역서   | 4대 보험 가입 여부, 입사일 확인                                                          |
|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기업 여부 확인                                                                   |
| 어업 및 수산업 분야<br>산업체 | 사업자등록증      | 회사명, 사업장 소재지(어촌 소재), 업태·종목(블루푸드 테크),<br>대기업, 가족기업 여부 확인                      |
|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법인사업자의 경우 제출하며, 사업 목적, 가족기업 여부 확인                                            |
|                    | 근로계약서(개인)   |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대신 제출하며, 근로계약,<br>가족기업 여부 확인                               |
|                    | 4대보험가입내역서   | 4대 보험 가입 여부, 입사일 확인                                                          |
|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기업 여부 확인                                                                   |
|                    | 기타서류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br>* 실 근무지가 어촌임을 증명할 때, 담당업무가 어업 및 수산업 임을 증명<br>할 때 등 제출 |

## 참고 7

## 청년창업어업인장학금과 타장학금 비교표

| 구분    | 청년창업어업인장학금<br>(해양수산부·한국농어촌희망재단)                                                                                | 청년창업농장학금<br>(농식품부·한국농어촌희망재단)                                                                                                     |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 I 유형)<br>(한국장학재단)                                                        |
|-------|----------------------------------------------------------------------------------------------------------------|----------------------------------------------------------------------------------------------------------------------------------|--------------------------------------------------------------------------------------------|
| 지원 대상 | ■ 수산계 대학 수산계열학과 재학 중인 1학년 2학기~4학년 재학생으로 직전 학기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 졸업 후 어업분야 취창업 희망자           | ■ 대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이상(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 재학생으로 직전 학기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 졸업 후 <b>농림축산식품분야</b> 취창업 희망자 | ■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 학생으로 직전학기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 중소기업취업 연계장학금 희망자 |
| 지원 내용 | ■ 학기당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00만원                                                                                     | ■ 학기당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50만원                                                                                                       | ■ 학기당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00만원                                                                 |
| 선발 인원 | ■ 60명(학기당 30명)                                                                                                 | ■ 1,720명(학기당 860명)                                                                                                               | ■ 9,300건(학기당 4,900명)                                                                       |
| 지원 횟수 | ■ 최대 7회                                                                                                        | ■ 최대 7회                                                                                                                          | ■ 선발학기에 소속한 학년제별로 장학금 지원 횟수 제한(2년제 4회~5년제이상 10회)                                           |
| 선발 기준 | ■ 어업 관련 취창업계획서, 성적                                                                                             | ■ 농업 관련 취창업계획서, 성적                                                                                                               | ■ 중소기업 취창업 의지, 성적 등                                                                        |
| 선발 절차 | ■ 대학 추천 및 재단 서류심사 후 확정                                                                                         | ■ 대학 추천 및 재단 서류심사 후 확정                                                                                                           | ■ 유형별(취업지원형, 창업지원형) 모집인원을 학제별 배정(5:5), 선정기준에 따라 대학에서 추천(서류심사→면접심사) 후 재단에서 최종 심사 후 확정       |
| 의무 교육 | ■ 장학생의 졸업 후 안정적인 정착 및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b>교육과정 (OT, 지정교육/최대25시간)</b> 이수 필수                                         | ■ 장학생의 졸업 후 안정적인 정착 및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b>교육과정 (OT, 지정교육/최대25시간)</b> 이수 필수                                                           | ■ 기본소양교육(장학금 신청 시) 및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 의무 종사 | ■ 졸업 후 장학금지원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b>어업 및 수산산업분야 취창업</b><br>*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 수혜횟수(학기) × 6개월                             | ■ 졸업 후 장학금지원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b>농림축산식품분야 취창업</b><br>*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 수혜횟수(학기) × 6개월                                                  | ■ 장학금 지원횟수 및 지원유형에 따라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창업<br>*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 수혜횟수(학기) × 6개월                      |
| 반환 환수 | ■ 의무종사 불이행 시 지원된 장학금 반환환수<br>* 보증보험가입 필수(보증보험료 재단 지원)                                                          | ■ 의무종사 불이행 시 지원된 장학금 반환환수<br>* 보증보험가입 필수(보증보험료 재단 지원)                                                                            | ■ 의무종사 불이행 시 지원된 장학금 반환환수<br>* 보증보험가입 필수(보증보험료 재단 지원)                                      |
| 비고    | ■ 선발-재학 중-졸업 후(진출경로) 단계별 DB구축하여 사후관리<br>■ 해양수산부 중심으로 관련 기관 간 유기적 협력 및 정책 연계를 통해 어업·어촌 청년 일자리 제공 및 창업·어업인 정착 지원 | ■ 선발-재학 중-졸업 후(진출경로) 단계별 DB구축하여 사후관리<br>■ 농식품부 중심으로 관련 기관 간 유기적 협력 및 정책 연계를 통해 농업·농촌 청년 일자리 제공 및 창업·농정 정착 지원                     | -                                                                                          |

